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507-14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 기준서

2018

NATIONAL TAX SERVICE

KOREA FEDERATION OF SMES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KBIZ 중소기업중앙회
Korea Federation of SMEs

머 리 말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여 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납부 등 성실납세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 기준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 계정 과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사항을 설명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법 해석 사례 등도 수록하였으니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길라잡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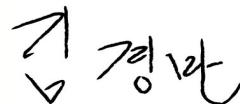
앞으로도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편을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발굴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2018. 3.

국 세 청 법인납세국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Contents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처리 기준서

제1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I. 2018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2
1. 2018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2
2.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3
3. 주요 세법개정내용	13
II. 법인세의 납세의무	24
III.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27
1.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28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31
3.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	33
4. 세법상 가산세	35
IV.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39
1.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39
2.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의무	41
3.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46

V.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47
VI.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49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49
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50
3.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51
4.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54

제2장 세무조정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I.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62
1. 세무조정	62
2. 소득처분	66
II.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74
1.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74
2.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80

제3장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I. 인건비	86
1. 기업회계	86
2. 법인세법	91
II. 퇴직급여	93
1. 기업회계	93
2. 법인세법	97
III. 대손금	112
1. 기업회계	112
2. 법인세법	116
IV. 접대비	130
1. 기업회계	130
2. 법인세법	133
V. 기부금	149
1. 기업회계	149
2. 법인세법	150
VI. 감가상각비	162
1. 기업회계	162
2. 법인세법	169

VII. 지급이자	195
1. 기업회계	195
2. 법인세법	196
VIII. 외화환산손익	211
1. 기업회계	211
2. 법인세법	214
IX.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218
1. 법인세법	218

제4장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I. 기업회계	228
1. 당좌자산	228
2. 채고자산	247
3. 투자자산	258
4. 유형자산	265
5. 무형자산	276
II. 법인세법	283
1. 자산의 취득가액	283
2. 자산·부채의 평가	285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처리 기준서

N a t i o n a l T a x S e r v i c e

<http://www.nts.go.kr>



제 1 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 I. 2018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 II. 법인세의 납세의무
- III.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 IV.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V.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VI.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제 1 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I 2018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1. 2018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 올해 법인세 신고지원 방안의 핵심은 ‘납세자 맞춤형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임
 - 성실신고 사전지원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중심의 신고안내 자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

주요 성실신고 지원 항목

- 납세자가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 확대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또는 분석자료를 신고 시 제공
 - 지출증빙 수취내용 분석자료,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분석자료, 상품권 구입 자료, 가족인건비 등 자료, 서화·골동품 구입자료
- 자기검증서식 제공 확대(’17년 10종 → ’18년 12종)
- 공제감면 요건 및 적정여부를 신고단계에서 확인하는 자기검증 서비스
- 세무대리인이 수입납세자 신고도움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는 화면 제공
- 연도별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제공기간을 365일로 확대

②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개선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안내 항목을 확대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신고서비스 개선
- * 화면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③ 신고지원 항목에 대한 신고반영 여부 검증

-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 반영 여부를 검증 할 예정임
 -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 등 자기검증 서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후적 부담을 최소화
- * 제출방법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가능

2.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주요 항목이니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가 과다계상】

①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② 법인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③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5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⑤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감면세액】

8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17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10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9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7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6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0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를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 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1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 법인세법§5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 법인세법§5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 * 법인세법§5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특수관계인 거래】

1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 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88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15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 포함)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용역거래 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 누적액을 초과·과소 계상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오류로 소득이 초과·과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정

*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41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6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 법인세법§26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44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손익 귀속시기】

17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법인세법§22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18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법인세법§40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1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 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성과급 등은 제외)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처분

* 법인세법§20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부동산 양도차익】

2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 대상임

*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3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4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 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 법인세법§16 【배당금 또는 배당금의 의제】

25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분명하게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타법인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기관·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전액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41 【자산의 취득가액】

26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41 【자산의 취득가액】

【기타】

27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27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50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28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 법인세법§27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9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 법인세법§19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0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 법인세법§13 【과세표준】

3. 주요 세법개정내용

【공통사항】

① 법인세율(법인세법*§55),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132)

* 이하 ‘법법’으로 기재, 법인세법시행령은 이하 ‘법령’으로 기재

** 이하 ‘조특법’으로 기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가.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 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나. 최저한세율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17%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령§50의2)

-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하여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 월할계산 근거 마련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 : 8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한도액 : 8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 (보유 월수/사업연도 월수) × (사업연도 월수/12) = 보유월수/12

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령§50의2)

-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종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해 적용
 - (개정) 2017.1.1. 이후에도 계속 적용

④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조건 조정

가.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①, §23①)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소비성서비스업) 조특령§29③ 준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 2017.1.1.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나.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6)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을 상향
 - (청년 창업중소기업)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기간 제외)이고, 최대주주인 중소기업
 - (감면율)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포함 3년 간 75%, 이후 2년간 50%
- * 2017.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다.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조특법§7)

-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
 - 법인세의 30% 세액감면
-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라.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를 확대(조특법§12)

- 중소기업이 취득 시 : 취득금액의 7% → 10%
 -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 시 : 취득금액의 5%
- * 2017.1.1.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⑤ 고용지원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적용대상 확대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조특법§29의5)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공제액 인상
 -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백만원, 일반기업 3백만원
- * 2017.4.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

나. 정규직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2)

- 대상기업 확대 및 공제액 상향
 - (대상기업) 중견기업 포함
 - (정규직 전환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
- * 2017.4.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94)

-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 시 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7%
 -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4)

- 신성장서비스업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공제율 인상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종전 50%)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종전 50%)
 -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대상 조정

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9)

-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에 국내 대학·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추가
 - *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등(조특법§10)

- 중견·대기업 공제율 인상
 - 20% → 최대 30%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7개 기술로 통합조정
 - * 2017.2.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투자·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신설

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5)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세액공제
 - (공제조건) 전체 R&D 비중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이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적용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
 - * 2017.1.1.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의6)

-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지원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세액공제
 - (공제시기) 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 2019.12.31.
 -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분부터 적용

8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가. 중소·중견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향(조특법§26)

-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공제 한도 관련 1인당 공제액 500만원 상향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원
 -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추가공제율 중소기업 2% 상향, 중견기업 1% 상향
 - * 2017.4.18.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

나.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조특법§121의2)

- 신성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도
 - 세제지원 대상 : 제조업 전반의 고도기술 등 기재부 고시에 열거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과 동일하게 규정
 - 감면대상 사업소득만 감면 → 감면대상 사업소득이 관련사업* 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전체소득 감면
 - * 신성장기술을 활용한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
 - 한도 : 외국인투자금액의 90% → 100%(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50%)
 - 투자금액 기준 신설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투자
 - * 2017.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다. 가속 감가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28의2)

- 한시적으로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조기투자 유도
 - (중소기업) 자산 취득기간 2014.10.1.~ 2016.6.30. → 2016.7.1.~2017.6.30. 연장
 - (중견기업 신설) 자산 취득기간 2016.1.1.~ 2017.6.30.
 - * 중견기업은 2016. 1. 1.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9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가.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법령§19)

-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생활용품(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의 장부가액도 손비로 인정
 - * 2017.2.4.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범위 확대(국조령§6⑦)

-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제공
 - 제3자간 거래 통상이자율
 - 국가별 기준금리,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간주 정상이자율
 - *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 가능
 - * 2017.2.7. 이후 자금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국조법§12, 국조령§51)

- 국제거래명세서 전부·일부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국외 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 2017.2.7. 이후부터 적용

라.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국조령§6⑦)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⑩ 공평과세를 위해 적용기준 강화 및 의무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가.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법§60의2)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 (대상) 소규모법인 요건(법령§39③)에 해당하는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단,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신고기한 1개월 연장)
 -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
 -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법§76⑨, §121)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가산세는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 10억원) 이상인 자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전송 가산세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 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조법§11, 국조령§21의2)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경영전반 및 이전가격 정보 제출의무 부여
- 제출서류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 다국적기업의 경영 전반 및 이전가격 정보 포함
 - (개별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주요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조직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국가별 매출액,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수, 유형자산, 현지법인 목록 및 현지법인의 주요사업활동 내용

● 외형 기준 제출 대상자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①,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7억 5천만유로 상당액) 초과 내국법인 (최종 모회사) 등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2017.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라.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령§19의2)

● 건설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산입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 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 2017. 2.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마.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법§25, 법법§27의2)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 (요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기업구조조정 세정지원 확대

가. 완전자회사간 합병 시 과세이연 허용(법법§44③)

- 자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과세특례 대상 확대
 -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간 합병
 - * 20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나. 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법§45③, 법법§46의4③)

-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 (Built-in loss)로 축소
 - 합병 후 시가 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을 제한 없이 전체 사업에서 공제 가능
 -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물적분할·현물출자 시 사후관리 완화(법법§47③, 법법§47의2③)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 기간을 3년(종전 : 무기한 의무 보유)으로 완화
 -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물적분할·현물출자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령§84, 법령§84의2)

-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 확대
 -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
 - * 2017.2.3. 이후 적격구조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가.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직원 확대(조특령§30의2)

- 사업전환 기간 5년(3년) 이내로 연장
 -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조특법§104의10)

- 해운기업 통세 특례적용 포기를 한시적 허용
 - *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104의24)

-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감면대상 및 한도 확대
 - 중견기업 추가, 대상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대
 -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을 50% 이상 감축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
 - * 2017.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분부터 적용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완화(조특법§121의32)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과세요건 완화
 - 합병대가 중 주식 70%(종전 80%) 이상 배정
 - * 2017.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12.31.

마.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령§156②)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부담완화를 위해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 간 합병 범위를 확대
 - (동일사업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 세분류
 - * 2017. 1. 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12.31.

II 법인세의 납세의무

1 법인세 납세의무자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3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 법인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②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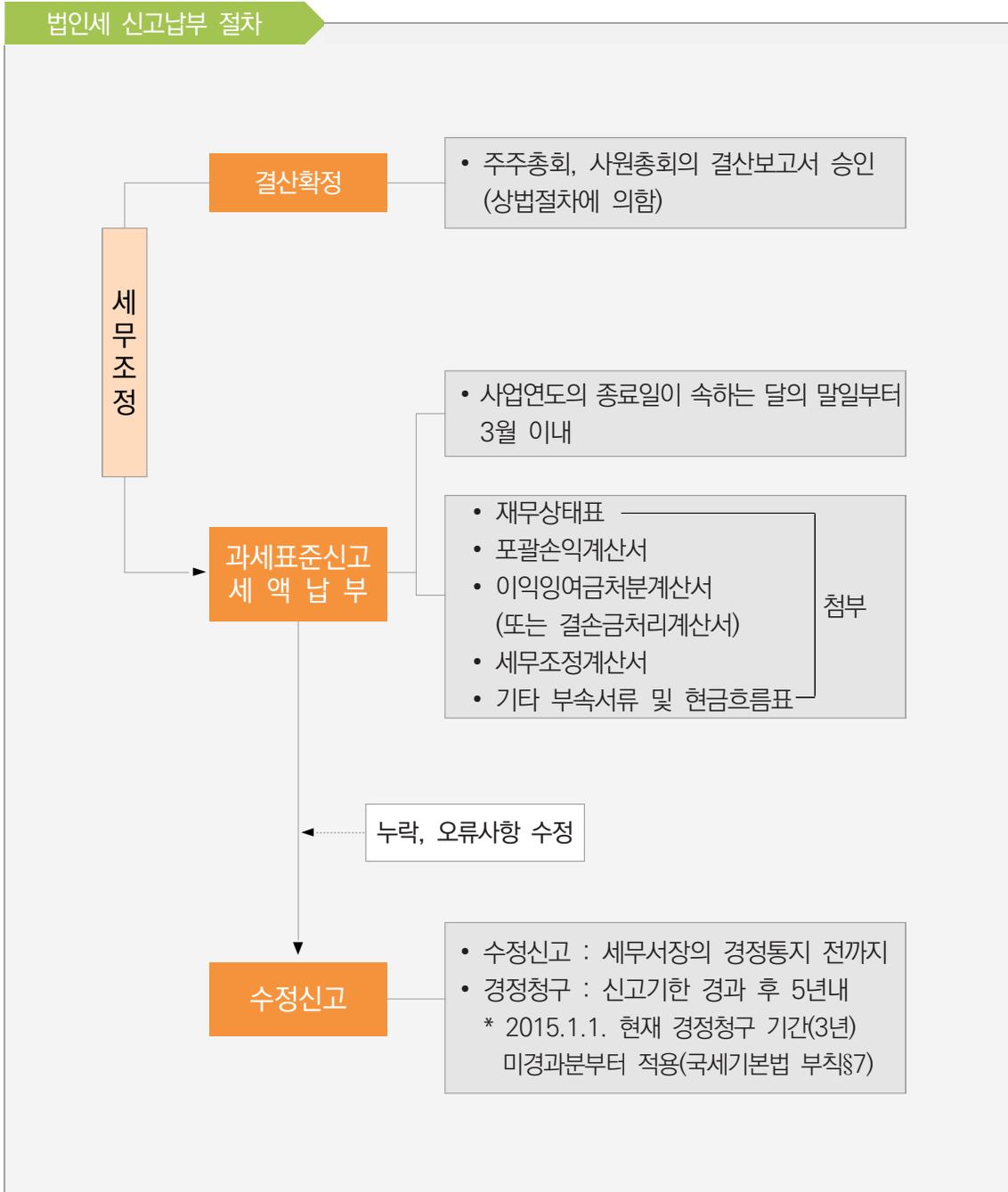
- ②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III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1.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①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②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법§60②).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법칙§82①3호)
-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세액의 납부방법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때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세의 물납(법법§65) → '16.1.1. 이후 물납신청분부터 폐지

-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2016.1.1.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제7항 및 제6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부칙 <제13555호, 2015.12.15>)

나. 법인세의 분납(법법§64②)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0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이하
-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5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500만원 이하

5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2~§4).

-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함)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 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함)
- ⑧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⑨ 위 ①, 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6 세액의 환급

-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 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① 수정신고(국세기본법§45)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수정신고의 요건(국세기본법§45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8)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② 경정청구(국세기본법§45의2)

가. 일반적인 경정청구

-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5.1.1. 현재 경정청구기간(3년) 미경과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부칙§7)

- 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 ②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2016.1.1.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1.1. 전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적용)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②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 ③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④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⑤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 ⑥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⑦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3.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국세기본법§47~§47의5)

-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 국제거래 60%)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법령§106)

-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법법§66)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 손익 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적법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2017.11.9.)

- **경정청구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대법원2017두50782, 2017.10.26.)

-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기본-2639, 2016.2.11.)

-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 조세46019-135, 2003.4.7.)

4. 세법상 가산세

① 법인세법상 가산세(법법§76)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②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12.1.1.이후 설립신고하는 내국법인부터 적용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이내 또는 법인설립신고전 사업자등록하는 때에 제출)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0.5%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2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③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④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국기법§48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⑤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12.1.1. 이후부터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분도 제출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1년 이내 부과기한 폐지
⑥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공급가액의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와 중복배제
⑦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16.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지연전송) 제출기한 경과 후 전송하는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미전송) 제출기한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16.12.31. 이전까지는 0.1% • 공급가액의 1% * '16.12.31. 이전까지는 0.3%

종 류	요 건	내 용
⑧ 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공급가액의 0.5%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2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면세법인)	• 공급가액의 0.5%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25%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⑩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주요사항 미기재 : 해당 금액의 2% •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해당금액의 0.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⑪ 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불성실가산세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⑫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미가입한 경우 :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 × 미가맹기간 • 발급 거부 등 :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법§3③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②~⑩, ⑬의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단, 법법§76⑨4호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 → 기본법§49

②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신고 가산세 (기본법§47의2)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부정 국제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②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기본법§47의3)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부정국제거래는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과소 신고납부세액등-부정과소신고납 부세액등)×10%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③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기본법§47의4)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치지 못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환급 받은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미납(초과환급)일수
④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과②를 합한금액(10%한도) ① 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3%

가. 가산세의 면제

- 가산세 부과와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기본법§48①).

* 가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② 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 소득금액의 100분의4 •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2
③ 동업기업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 (한도 : 미납세액의 10%) ① 미납세액×0.03%×미납일수 ② 미납세액의 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지급명세서등제출불성실 가산세(상증법§78⑫⑬)	상증법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소정기한 내 미제출·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불분명한 경우	• 미제출·누락·불분명한금액의 0.2% * 단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2% 적용 • 제출기한 경과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0.1% * 단,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

* 제출하여야 할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IV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1.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①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법§116②, 법령§158③)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② 현금영수증
-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④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 카드종류별 정규 지출증명 인정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로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로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화점 카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무기명)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 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인트 카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법령§158③)

가.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통칙 116-158...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법§116②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②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①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가.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예) ①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②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③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 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범위(법령§158①)

- ① 법인
 - 영리내국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②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 ③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2006.2.9.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 ①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사회비
- ②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③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① 법령§158②에서 규정하는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이하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127①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② 법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

- 부가가치세법§10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등

2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법법§76⑤).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명 서류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합니다.

3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법령§158⑤)

- 지출법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법§116①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126의3④에 따른 현금영수증
- ② 법법§116②(1)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 ③ 「부가가치세법」 §32③,⑤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④ 「소득세법 시행령」 §211⑧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의무(법령§158⑥)

-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법령§158⑥)

☞ 단, 적용시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법인세법 부칙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



■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기본법통칙 85의3-0...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지출증빙서류 수취여부

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789, 2009.7.14.)

■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제도46012-10511, 2001.4.10.)

* 2009년 이후는 1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3.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8년 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초과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증명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2006.1.1.부터)

* 2012.1.1. 이후 최초 지출분부터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도 증명수취의무 예외 인정

-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규칙§20②)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법§25②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법령§41⑧).
 - 이 경우 법인의 명목과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목이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황이 일차적으로 사용자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V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법법§121),
-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령§164).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법법§121⑥).

- 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가산세

-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한 경우 2%, 그 외는 공급가액의 1%(합계표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에는 0.5%)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200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2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20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가산세는 20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법법§76⑨, §121).

① 대상자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직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 10억원) 이상인 자

② 가산세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 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③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소득령§211②)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79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 ①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③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④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VI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은 일치하지 않으며 '15.6.30.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일부 조문 제외)되므로 법령 등의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령§2①)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②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호 나목 참조)

*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 : 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4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3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

4.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조특령§2③).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1.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2⑤)

2.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3.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2①③)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기본통칙 4-2...5)
* 조특령§6⑥ 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음



■ 해외 위탁생산시 업종구분 및 감면대상 여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제1호 (어)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세과-2707, 2016.10.27.)

■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비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던 중 2008.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으로 해당 업종이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09사업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임(법규법인 2009-434, 2009.12.29.)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

■ 겸업 법인의 주업종 판정방법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팀 -1170, 2007.6.21.)



■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등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령해석과-2540, 2015.10.2.)

■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관계기업 판단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시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에 대한 요건은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른 일반적인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재조특-52, 2014.1.23.)

■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9사업연도(2009.1.1. ~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 유예기간 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던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분할하거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모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776, 2010.8.20.)

■ 창업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 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428, 2009.4.9.)

■ 소기업은 유예기간 적용 않음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이 아님(재경부·조예-290, 2006.5.12.)

4.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접대비 한도액(법법§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한도액 : ①+② ① 기본금액 1,200만원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한도액 : ①+② ① 기본금액 2,400만원 ② 좌동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법법§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5)	해당없음	투자금액×3%(중소기업 중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과 신규 상장 중견기업은 이후 3년간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해당없음	창업후(벤처기업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 청년창업 중소기업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 2005.1.1. 이후 최초 개회사업 연도 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 비율 적용)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업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 • 중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 : 10% * 도매업등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7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결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 ×0.4% -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15% * 한도 : 법인세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환어음·판매대금 추심 의뢰서, 지급기한이 60일 이내인 기업 구매전용카드, 상환 기한이 60일 이내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대금결제 기한이 60일 이내인 구매론네트워크론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내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액) ×0.5% - (31~60일내 결제금액 - 약속어음결제액)×0.15% * 한도 : 법인세의 1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7의4)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 지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2% - 지급기한 15일~60일내 지급금액 ×0.1% * 한도 : 법인세의 10%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저가 양도시 - 기증금액 손금산입	• 기증받은 설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손금산입(과세이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1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30%
	위 해당·선택 않는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30% ② 당해연도 R&D비용×(1+α) → 2%한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의 1/2)]	위 해당·선택 않는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 2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50% ② 당해연도 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40% ② 당해연도 R&D비용×8%	☞ 중견기업(조특령§9④)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대상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조특법§11)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6%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	해당없음	• 특허권 등 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 25% 감면
	•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 법인세의 10% 한도) *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취득에 한정	• 취득금액의 10% (세액공제, 법인세의 10% 한도)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 투자금액의 3%(대기업), 5%(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7% • 타인설비를 인터넷 이용하는 (ASP방식) 비용의 7%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	• 투자금액의 3%(대기업), 5%(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7%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투자 ×10%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의2)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의3)	• 투자금액의 3%(대기업), 5%(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의4)	• 투자금액의 1%(대기업), 3%(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6%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의5)	• 투자금액의 5%(대기업), 7%(중견기업)	• 투자금액의 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조특법§25의6)	• 투자금액의 5%(대기업), 7%(중견기업)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 공제시기 : 방송영화상영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6)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일반기업</th> <th colspan="2">중견기업</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r> <tr> <th>수도권 내</th> <th>수도권 밖</th> <th>수도권 내</th> <th>수도권 밖</th> <th>수도권 내</th> <th>수도권 밖</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공제</td> <td>0%</td> <td>0%</td> <td>1%</td> <td>2%</td> <td>3%</td> <td>3%</td> </tr> <tr> <td colspan="4">고용감소시 배제</td> <td colspan="2">허용</td> </tr> <tr> <td rowspan="2">추가 공제</td> <td>일반</td> <td>3%</td> <td>4%</td> <td>5%(4%)</td> <td>6%(5%)</td> <td>6%(4%)</td> <td>7%(5%)</td> </tr> <tr> <td>서비스</td> <td>4%</td> <td>5%</td> <td>6%(5%)</td> <td>7%(6%)</td> <td>7%(5%)</td> <td>8%(6%)</td> </tr> <tr> <td rowspan="2">합계</td> <td>일반</td> <td>3%</td> <td>4%</td> <td>6%(5%)</td> <td>8%(7%)</td> <td>9%(7%)</td> <td>10%(8%)</td> </tr> <tr> <td>서비스</td> <td>4%</td> <td>5%</td> <td>7%(6%)</td> <td>9%(8%)</td> <td>10%(8%)</td> <td>11%(9%)</td> </tr> </tbody> </table>							구 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 공제	일반	3%	4%	5%(4%)	6%(5%)	6%(4%)	7%(5%)	서비스	4%	5%	6%(5%)	7%(6%)	7%(5%)	8%(6%)	합계	일반	3%	4%	6%(5%)	8%(7%)	9%(7%)	10%(8%)	서비스	4%	5%	7%(6%)	9%(8%)	10%(8%)	11%(9%)
	구 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 공제	일반	3%	4%	5%(4%)	6%(5%)	6%(4%)	7%(5%)																																																							
		서비스	4%	5%	6%(5%)	7%(6%)	7%(5%)	8%(6%)																																																							
	합계	일반	3%	4%	6%(5%)	8%(7%)	9%(7%)	10%(8%)																																																							
서비스		4%	5%	7%(6%)	9%(8%)	10%(8%)	11%(9%)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 감소 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 추가세액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천 ~ 2천5백만원																																																															
* ()는 2017.4.18.전 투자분에 적용(부칙 제14760호, 제6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의2)	해당없음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서 퇴직소득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1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3) * 경력단절사유에 임신 추가	해당없음	• 재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10%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기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10%
	<p>(중소기업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율 합계×5%(중견기업 10%) 	<p>(①·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과세연도 정규직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율 합계×20%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29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3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 공제 인적한도 :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 1,000만원 * 공제 인적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30의2)	중견기업이 2016.6.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6.30.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7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0의3)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공제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상시근로자수 × 50% * '09.5.21.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15~29세)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청년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33의2)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4년간 50% 감면 * 5년 이상 사업영위 중소기업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63)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간 100%, 그후 3년(2년)간 50% * 공장이 없는 경우 §63의2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법인의 공장·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의2)	중소기업과 동일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간 100%, 그후 3년(2년)간 50%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중개·매매업, 건설업 등은 제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의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좌동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해당없음	•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특법§130)	1990.1.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 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일시 허용 (투자금액의 3%) ☞ 2009.1.1. 이후 투자 개시하여 2009.12.31.까지 투자 시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증설투자 공제안됨)				
최저한세(조특법§132)	①②중 큰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좌동				
	*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차등적용					
	구 분	과세표준	'10년	'11~'12년	'13년	'14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	7%	7%	7%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9%	9%
	일반기업	100억 이하	10%	10%	10%	10%
		1천억 이하		11%	12%	12%
		1천억 초과	14%	14%	16%	17%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처리 기준서

N a t i o n a l T a x S e r v i c e

<http://www.nts.go.kr>



제2장

세무조정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I.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II.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 2 장 세무조정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I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1. 세무조정

① 세무조정의 개념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 : 지급 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정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①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② 신고조정 : 회사장부에 계상 없이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며, 정확한 과세 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 유형

- ①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②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③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④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가. 결산조정

-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 조특법 부칙§4(제10068호, '10.3.12.) 적용자산('04.1.1. 이후 신고분부터), 국제회계 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 ('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 ③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 ④ 대손충당금(법법§34),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19의2③2)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실
 -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법법§42③1)
 -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실(법법§42③2)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의 부도발생 등에 의한 평가손실(법법§42③3)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실(법법§42③4)
- ⑦ 생산설비의 폐기손실(법령§31⑦)

나. 신고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 결손금 보전에 총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6호)
-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령§64 내지 §66)
-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 ⑤ 제 총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⑥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법§23)
-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법§28①3호)
- ⑧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 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1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가. 유보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의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써 당해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예) 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

- 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 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며,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법령§106④).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등

종 전	개 정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된 경우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상여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자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에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2) 대표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의 판정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합니다.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합니다 (법령§106①.1 단서).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처분합니다(법칙§54).

다. 배당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법 §17①.4),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라. 기타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 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되며, 법인에게서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마. 기타사외유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합니다.

바. 소득의 지급시기 및 수입시기

소득의 지급시기

구 분	지급시기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처분	수입시기
상 여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령§49①.3)
배 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소득령§46.6)
기타소득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소득령§50①.2)

2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 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장부 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 합니다.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
-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으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상의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을 때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3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가산 •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 한도초과액 •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 기부금	•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당기미지급기부금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 당기가지급 계상분(한도액계산시 포함)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가 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사용인(임원 포함)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전 각 호 이외의 개인 	익금산입 " " "	배 당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기타사외 유출		
건설자금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손금불산입 "	유 보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수령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세 제외 금액(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 부동산등 지급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 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각종 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유 보	익금불산입 "	유 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 총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유 보
퇴직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대손 총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국고 보조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가 상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기부인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손금불산입 " "	기타사외유출 " 상 여	익금불산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88 ① 8호·8호의 2·9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익금산입	기타	손금산입	기타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대표자 가지급금 인출 시**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유출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 및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사외유출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2중827, 2013. 11. 15.)

■ **대표이사가 대신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1385, 2009.12.8.)

II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 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자산의 판매수익(법령§68)

가.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①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 ②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나.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라.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바.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1) 적용대상

-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 포함)로서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귀속사업연도

- (1) 및 (3)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결산 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 다만, 중소기업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로 신고조정 선택 가능(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3)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법령§69)

가. 적용대상

-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 예약매출 : 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 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나. 귀속사업연도

- 작업진행률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 장부미비 등으로 작업진행률 계산을 할 수 없거나 법법§51의2①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은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 완료일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및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선택 가능

다. 손익의 계산

-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 비용

* 작업진행률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생산량기준법 투입량기준법으로 산정가능

③ 이자수입 등 기타손익(법령§70)

가. 이자수입

(1) 일반법인의 수입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이자소득 수입시기

구 분	수입시기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3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는 그 상환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	① 기명인 경우 : 약정에 의한 지급일 ② 무기명인 경우 : 그 지급을 받은날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① 원칙 : 실제로 이자를 지급을 받은 날 ②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이자 : 원본전입일 ③ 해약으로인하여지급되는이자 : 해약일 ④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하는 날 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이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의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만료일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채권 증권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환매수·매도일 * 기일전 환매수·환매도 경우 그 환매수·매도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환급금의 지급일 * 기일 전에 해지시는 해지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지급일

(2)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 금융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현금주익)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나. 수입배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 : 잉여금처분결의일
- 주식의 소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감자를 결정한 날
-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다.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1) 임대료 수익

-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2)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2의3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3) 리스로 수입

-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5) 기타 익금

구 분	수입시기
관세환급금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
보험차익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
수용에 따른 보상금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 * 이익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의 차액은 조정금액이 확정된 날
국세 등 환급가산금	환급금결정이 확정된 날 * 통지를 요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	당해 물품 선적일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이자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 * 통지를 요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
손해배상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이 확정된 날 *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2.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

② 기타 손금

구 분	수입시기
매출할인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지급이자	소득세법시행령§45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날
자산의 평가손실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
기부금	①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 ② 미지급금으로 계상 :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 * 어음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보며, 수표는 교부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조세 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 :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용한 날 • 재산세 균등할주민세 및 종합토지세 : 고지일 • 등록세 : 등기일(취득원가에 산입) • 취득세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 : 대금결제일 주권인도일 권리이전일 • 추가로 확정된 세액 : 당해 세액 고지일(원칙), 의제매입세액 추가 납부는 사유 발생일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이자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 * 통지를 요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
손해배상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이 확정된 날



예규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통칙 40-69...7)

- ①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함
-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통칙 40-68...4)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여부 및 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법인2013-41, 2013.03.28)

■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상 분양대금 감소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된 경우의 세무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어 도급금액(수입금액)을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의 사업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서면법규과-1429, 2012.11.30.)

■ 아파트 예약매출 중 분양 후 미입주주택에 대한 분양수익 귀속시기

아파트 예약매출에 대해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인식하던 내국법인이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계약금액(분양수입금액)에서 분양계약은 유지 중이나 입주지정일에 미입주한 주택의 분양가액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반영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법규과-1254, 2012.10.29.)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라함)을 위임 받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 하고 있으나 구분경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 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3, 2012.4.4.)

■ 사용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706, 2011.9.28. → 법규과-1246, 2011.9.21.)

■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 시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875, 2009.7.31.)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부족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재경부 법인-280, 2004.4.29.)

-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 시 손금귀속 시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서면2팀-460, 2004.3.16.)

-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법인46012-499, 2002.9.11.)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처리 기준서

N a t i o n a l T a x S e r v i c e

<http://www.nts.go.kr>



제3장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 | |
|-----------------------------|--------------|
| I. 인건비 | II. 퇴직급여 |
| III. 대손금 | IV. 접대비 |
| V. 기부금 | VI. 감가상각비 |
| VII. 지급이자 | VIII. 외화환산손익 |
| IX.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제 3 장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I 인건비

1. 기업회계

① 인건비

- 인건비란 법인이 임원과 사용인에게 근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인건비는 급여·상여금·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다시 구분하면 급여·임금·수당 등 정기적인 성격의 것과 상여·퇴직급여와 같이 부정기적 성격의 것으로 분류됩니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이에 대한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급여로 인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합니다(제17조①).

사 례

(주)국세는 20X1년 12월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3,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결산일 현재 1,000,000원이 미지급인 상태이다.

(차) 급여	3,000,000	(대) 현금	2,000,000
		미지급비용	1,000,000

가. 인건비의 종류

- 인건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기준 21.4, 21.3).
 - ① 기업과 종업원(종업원단체 또는 그 대표자 포함) 사이에 합의 된 공식적인 제도나 그 밖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 ② 기업이 공공제도, 산업별제도 등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나 산업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
 - ③ 의제 의무를 발생시키는 비공식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나. 인식과 측정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합니다(일반기준 21.5).
 - 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②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 재고자산,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또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합니다.

사 례

(주)국세의 김성실 과장은 20X1년 12월에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의 근로(8할 이상)을 제공한 상태로 20X2년에 2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김성실 과장의 급여는 하루 기준 100,000원이고 (주)국세는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다. 이때 재무제표에 미지급부채를 계상해야 하는 연도와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이 경우 20X1년에 근무를 8할 이상 제공하였으므로 20X1년에 미리 미지급비용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함)

(차) 급여	2,000,000	(대) 미지급급여	2,000,000
--------	-----------	-----------	-----------

2 복리후생비

가. 복리후생비의 의의

-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수당 등과 같은 인건비와는 별도로 근로환경의 개선이나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모든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간접적인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관리비 및 제조경비에 계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 건설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나. 복리후생비의 종류

- 복리후생비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① 법정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등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사용인을 대신하여 회사 차원에서 부담하는 복리후생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 ② 복리시설비
종업원의 건강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③ 기타의 복리후생비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복리후생비를 말합니다. 식사 관련 비용, 작업복 등의 소모품 관련 비용, 종업원 경조사비 관련 비용, 동아리 활동 지원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FAQ : 선급보험료의 회계처리가 궁금해요

선급보험료는 지출하는 시점에서 선급금 등으로 분개를 한 후 일할 또는 월할 계산에 의한 미경과분을 기말에 수정분개 형태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국세는 7월 1일에 1년치 종업원관련 보험료 12억원을 이체하였을 경우 7월 1일과 결산일 현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7. 1. (차) 선급보험료	12억원	(대) 현금	12억원
12.31. (차) 보험료	6억원	(대) 선급보험료	6억원

다. 복리후생비의 실무상 유의사항

-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회사 내부 직원들에게 집행되는 비용이므로 향후 적격증명을 갖췄는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계 담당자들은 경조금 지급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경조휴가 · 경조금 지급 신청서

□ 휴가 신청서

결 재	담당	부서장	상무	대표

성 명	부 서	직책/직위
경조(휴가)내용	휴가기간(일수) 2017. . . ~ . . . (일간)	경 조 금 ₩ , 원

위와 같이 경조휴가 · 경조금 지급신청

휴가신청

을 드리오니 허락 /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구 분	내 용			비 고		
	경조휴가	경조금	화환조화 ¹⁾			
경 사	본인결혼	6	500,000	○	1) 화환 및 조화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150,000원 상당으로 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임원급 미만은 200,000원 상당액으로, 임원급 이상은 300,000원 상당액으로 증정한다.	
	자녀출산(또는 결혼)	3(1)	300,000	○		
	부모회갑(배우자포함)	1	300,000	-		
	형제자매결혼	1	200,000	-		
	본인생일	-	100,000	-		
	자녀 뉘	-	300,000	-		
	자녀입학지원	초등학교	-	100,000		-
		중등학교	-	200,000		-
		고등학교	-	300,000		-
		대 학 교	-	500,000		-
조 사	본인사망	-	2,000,000	○		
	부모사망(배우자 포함)	6	1,000,000	○		
	배우자사망	6	1,000,000	○		
	(외)조부모사망	3	200,000	-		
	자녀사망	3	500,000	-		
장 기 근 속	형제자매사망	3	500,000	○		
	5년	3	1,000,000	-		
	10년	4	2,000,000	-		
	15년	5	3,000,000	-		
20년	6	4,000,000	-			

※ 반환사유

본 경조금 지급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당해 지급 금원을 즉시 반환 조치함.

※ 지급제한

1.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 정액의 50%를 지급. (단, 본인생일 경우 사기진작 차원 100%지급)
2. 허위의 경조금 지급사유 적발 사례가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경영사정상 경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

2. 법인세법

1 급여

• 근로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임금 수당 등)는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법령§43①③④).
 -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 ②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 등에게 과다 지급되는 보수
 - ③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2 상여금

• 상여금이라 함은 법인이 근로의 제공을 받고 월정급여 이외의 대가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인 급여를 말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가.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령§43②).

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
- ③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3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 후생비 중 다음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45①).

손금에 산입하는 복리후생비

- ① 직장체육비
- ② 직장연예비
- ③ 직장회식비
-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⑦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① 내지 ⑥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법인이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축의금, 부의금 등의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봅니다.
- 소액주주인 임원,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 관리비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사택의 사용자가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 제외)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합니다.

II 퇴직급여

1. 기업회계

1 의 의

-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제17조②).

가. 퇴직급여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에 따라 회계처리를 합니다(제17조③).
 - ①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 자산으로 표시합니다.
 - ③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계처리

①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 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	금	×××
② 확정급여부채 설정 시				
(차) 퇴 직 금 여	×××	(대) 확정급여부채		×××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제17조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회계처리

부담금(기여금) 납부 시

(차) 퇴 직 급여 × × × (대) 현 금 × × ×

나. 확정기여제도

(1) 인식 및 측정

-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합니다.
 - 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합니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②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부채

(1) 인식과 측정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급여규정의 개정과 급여의 인상으로 퇴직금소요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당기분과 전기 이전분을 일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관련 부채의 성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계처리를 합니다.
 - ①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 ②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라.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1) 인식과 측정

(가) 퇴직연금운용자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재무상태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인식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합니다.

(나) 재무상태표의 표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합니다.

실무 핵심 포인트

〈단체퇴직보험 회계처리〉

퇴직금제도를 채택한 기업이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보험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총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②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합니다.
- ③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의 수령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며, 동 금액을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할 경우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2. 법인세법

1 퇴직급여충당금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법§33).

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 손금산입 범위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총급여액 기준

$$\text{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사용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제외)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 \times \frac{5}{100}$$

② 충당금 누적액 기준

$$\text{Max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법령§44의2④1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times \frac{0}{100}^{**} + \text{퇴직금 전환금 계상액}$$

* (가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나목)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2) 설정대상자의 범위

-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사용인

(3) 총급여액의 범위

- 총급여액은 소득세법§20①1·2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비과세 소득은 제외), 법령§43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으로 합니다(법인46012-776, 1998.3.30., 서야46012-11521, 2003.8.22).

(4)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법§3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합니다(통칙33-60...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계산

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기계상된 퇴직급여 총당금
- 기중 총당금 환입액 - 총당금 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5) 총당금의 상계(법법§33②)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칙 33-60...4).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통칙 33-60...5).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 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통칙 33-60...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칙§31②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칙§24①).
 - ☞ 종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원 사용인 구분없이 사용자부담금을 전액 손금 인정 하였으나, 임원에 대하여는 2010.2.1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법령§44의2③).

(6) 퇴직금전환금(1999.4.1 제도 폐지)(법령§60④)

- 19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누적액 한도액에 가산합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2076, 2017.7.27.)

■ 특수관계법인간 대표이사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633, 2012.10.19.)

-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종업원급여 중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문단 4(3)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501, 2012.8.20.)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시 설정전 부담금 지출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법인 2012-135, 2012.6.5.)

- 퇴직금제도 변경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제도로 변경한 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기간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63, 2012.1.16.)

나.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1) 사용자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령§44 및 법칙§22).

- ① 법인의 사용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월 이상 장기요양, 천재지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법칙§22②).

(2)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법령§44④)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그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령§43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 근속연수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칙§22⑤).

(3) 퇴직급여의 중간정산(법령§44②.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여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동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 중간정산 이후에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 호봉 상여 등을 누진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으로 봅니다.
- 2012.7.26. 이후에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중간정산하는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외에 중간정산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해당 근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예규

- 조직변경 후에 조직변경 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방법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제정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 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후에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서면법규과-1060, 2013.9.27.)
-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 시 세무처리
귀 연봉제 전환 후 전환전의 퇴직금제도로 재전환 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2006.12.1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법인세과-451, 2013.8.28.)

◇ 서면2팀-2544(2006.12.12.)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 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통칙 26-44...1)

■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26, 2012.1.9.)

■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181, 2010.12.27.)

- 연봉제 전환 시기가 다른 경우 현실적 퇴직 여부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3313, 2008.11.7.).

- 퇴직급여규정을 개인별로 정하는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594, 2007.4.5.)

다. 퇴직급여총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사업연도 : 2017.1.1.~2017.12.31.

②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정과목	구 분	총 급여액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자		퇴직급여지급 대상자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판매관리비	임원급여	3	180,000,000	-	-	3	180,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조원가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③ 퇴직급여총당금 내역

- 장부상 기초잔액 : 578,000,000원
- 총당금 부인누계액 : 38,000,000원
- 기중 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④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정관 규정에 따른 추계액)

- (111명) 1,798,000,000원

⑤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111명) 1,500,000,000원

⑥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총당금 : 129,300,000원

세무조정 계산

-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 ② 총급여액의 5/100와 퇴직급여추계액의 0/100에 퇴직급여 총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 ③ 한도초과액 129,300,000은 손금불산입

사 업 연 도	2017. 1. 1. ~ 2017.12.3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⑱의 계)		② 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비 고	
	2,173,000,000		5/100	108,650,0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④ 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⑥ 기중 총당금 환입액	⑦ 기초총당금 부인누계액	⑧ 기중 퇴직금 지급액	⑨ 차감액 (④-⑤-⑥-⑦-⑧)
	578,000,000	0	0	38,000,000	104,000,000	436,000,000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 (⑳ × 설정률)		⑪ 퇴직금전환금		⑫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⑨-⑩-⑪, 0)	
0		0		436,000,000		0
한도초과액 계 산	⑭ 한도액 MIN(③, ⑬)		⑮ 회사계상액		⑯ 한도초과액 (⑮-⑭)	
	0		129,300,000		129,300,000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⑰ 총급여액		⑱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⑲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⑳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임원급여	3	180,000,000	-	-	3	180,000,000	111	1,798,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⑳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퇴직연금미가입자의 경우 일시퇴직기준(㉑)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인원 금 액
제조비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㉑ 세법상 추계액 MAX(㉒, ㉑)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111	1,798,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퇴직연금 부담금 등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칙§23 각 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령§44의2②).
 - 내국법인이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그 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2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44의2④).
- ※ 퇴직연금 등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동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 손금산입 범위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Max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총당금 ^①	=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A)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 ^③	=	손금산입 한도액(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 ^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 ^③	=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D)
손금산입 범위액 = (C)와 (D)중 적은 금액				

-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총당금 = 장부상 기말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의 설정전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 =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 ③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 기초퇴직연금총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총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 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령§44④을 적용하되,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626,2017.6.22.)

■ 퇴직보험 해약과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과-895, 2013.8.19.).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법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 불입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020, 2010.10.29.)

-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 시 세무처리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총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총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 총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032, 2009.9.21.)

다.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①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정관 규정에 따른 추계액) : 100,000,000원
- ②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50,000,000원
- ③ 퇴직급여총당금 전기이월액 : 20,000,000원
 당기설정액 : 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 ④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60,000,000원
- ⑤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70,000,000원
 → 이중 당해사업 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15,000,000원임.
- ⑥ 당기회사불입액 : 25,000,000원
- ⑦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35,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 ① 퇴직급여 추계액 : 100,000,000원 [MAX(100,000,000원, 50,000,000원)]
-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원 (20,000,000 + 10,000,000)
- ③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 - ②) : 70,000,000원
- ④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45,000,000 (60,000,000 - 15,000,000)
-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 - ④) : 25,000,000
- ⑥ 기말현재 퇴직연금예치금등 : 80,000,000
(70,000,000 - 15,000,000 + 25,000,000)
- ⑦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부담금 등 : 35,000,000 (⑥ - ④)
- ⑧ 한도액 : 25,000,000 (⑤와 ⑦ 중 작은 금액)
- ⑨ 한도초과액 : 10,000,000 (35,000,000 - 25,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3.14>

사 업 연 도	2017.1.1. ~ 2017.12.3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① 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⑥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① - ⑤)
	② 장부상 기말잔액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④ 당기말 부인 누계액	⑤ 차감액 (② - ③ - ④)	
100,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0
⑦ 이미 손금 산입한 부담금 등(⑬)	⑧ 손금산입 한도액 (⑥ - ⑦)	⑨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⑱)	⑩ 손금산입범위액 (⑧과 ⑨ 중 작은 금액)	⑪ 회사손금 계상액	⑫ 조정금액 (⑩ - ⑪)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10,000,000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⑬ 퇴직연금 예치금 등 계(⑳)	⑭ 기초퇴직 연금 총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⑮ 퇴직연금 총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⑯ 기중 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⑰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⑭ - ⑮ - ⑯)	⑱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⑬ - ⑰)
80,000,000	60,000,00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⑲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⑳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㉑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㉒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⑲ - ⑳ + ㉑)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Ⅲ 대손금

1. 기업회계

1 의의

- 대손금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를 의미합니다.
- 기업회계에서는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합니다(제40조③). 즉,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합니다(제40조④).

- 여기서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6장 6.A8).
 - ①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②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이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 ④ 채무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⑤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손상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 ⑥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 ⑦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 : 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 ⑧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⑨ 기타 ① 내지 ⑧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

2 대손충당금 설정

가. 설정대상채권

- 매출채권, 장·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회사채 등(사모사채 등) 대손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취채권이 대상채권이 됩니다.

나. 대손추산방법

- 개별적으로 채권의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 과거의 평균대손율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 추산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 회계처리

- 최초설정 시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
(상거래 발생분 : 판매비와관리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		
(영업외비용)			

- 대손발생 시

(차) 대손충당금	×××	(대) 채 권	×××
대손상각비	×××		

(충당금잔액 부족 시)

- 결산 시(보충법적용)

- 당기 대손설정액 = 대손추산액 - 대손충당금잔액
- 당기 대손환입액 = 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추산액

라. 제각된 채권 회수 시

-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아닌 대손충당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질의회신 1999.4.16.).

(차) 현 금	×××	(대) 대손충당금	×××
---------	-----	-----------	-----

마. 대손충당금의 가감표시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감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다음의 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총액주의			순액표시	
매출채권	10,000		매출채권	9,000
(-)대손충당금	1,000	9,000		

〈대손금 회계처리〉

- ① 대손추산방법
개별적인 추산방법 또는 과거대손경험률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며 각각의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도 됩니다.
- ② 보충법적용
대손충당금설정은 보충법을 적용하며 총액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③ 부도어음의 처리
회계연도말 부도어음에 대하여 회수불능 판단시는 대손으로 처리하고 회수가능 판단시는 매출채권(장기로 판명시는 장기매출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즉 부도어음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발생시의 계정과목(매출채권 등)을 계속 사용하므로 계정재분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회신 1999.11.9.).
- ④ 대손처리된 채권의 회수처리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아닌 대손충당금을 회복(증가)하는 처리를 합니다.

③ 계정 분류 및 환입 시 처리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의 기타대손상각비로 구분합니다(제40조⑤).
- 또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합니다(제29조③).

2. 법인세법

① 대손금

-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총당금과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총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가.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법인세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손총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채권

- ① 다음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의2① 각 호의 1의 채무보증
 - 법령§61②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 채무보증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
 -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통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 ②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나. 대손금의 범위

(1)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채무의 면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은 제외)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금금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다)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라)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 외국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2)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가)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통칙 19의 2-19의2...1).

(나) 사망 실종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다) 해산한 법인 등에 대한 채권

-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에 대한 채권
-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라)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마)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가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바)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3) 그 외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가) 부도수표 어음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까지는 대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합니다. 단, 지급 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 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의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나)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마)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포기한 그 채권금액

(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법령§19의2⑤)

-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 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9의2-19의2...5에 따라 처리합니다(통칙 19의2-19의2...8).

다.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나”의 (1)의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기타의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손사유가 발생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대손금은 해당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합니다 (신고조정 사항으로 취급)(법령§19의2④).

2 대손충당금

-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법§34).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설정된 대손충당금 계정과 상계하며, 대손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등의 범위

(1) 외상매출금

- 상품 제품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 등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 대여한 금액

(3) 기타채권

-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법령§61②)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 합계액의 1%(금융회사 등은 2%,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금융회사도 1% 적용)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left(\begin{array}{c} \text{B/S상} \\ \text{매출채권} \end{array} + \begin{array}{c} \text{세무조정} \\ \text{미수계상누락} \end{array} + \begin{array}{c} \text{당기말 현재} \\ \text{대손금부인누계액} \end{array} \right) \times \begin{array}{c} 1/100 \\ \text{또는} \\ \text{대손실적률} \end{array} = \begin{array}{c} \text{대 손 충 당 금} \\ \text{손금산입범위액} \end{array}$$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시행령 제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세과-2015, 2008.8.14.).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법칙§32②).

다.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 유예(조특법§104의23)

- 201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감소되어 일시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대상법인 및 적용방법(선택사항)

- 201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법인

-
-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익금불산입액 계산

- 익금불산입액 =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3) 익금유예 및 환입방법

(가) 익금유예 방법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합니다.

(나) 유예된 환입액 익금산입 방법

- 익금유예된 사업연도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보다 큰 경우 익금불산입한 유예금액과 상계합니다(즉,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
- 잔액은 2015.1.1. 이후 최초로 게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2017, 2017.9.21.)

-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대손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은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법령해석법인-0114, 2016.9.7.)

- 특수관계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 귀속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PFV 법인(이하 “PFV”라 함)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 미수금(이하 “매출채권” 이라 함)이 발생하였으나 PFV가 사업수지의 악화로 누적결손인 상태에서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해산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원활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전담변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목적사업의 수행내역, 매출채권의 포기상황, PFV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아울러 위의 경우, 내국법인이 포기한 해당 매출채권의 금액이 PFV의 청산이 종결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규법인2014-397, 2014.10.15.)

-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대법원2013두6732, 2013.7.11.)

- 특수관계 성립 전 발생한 채권의 특수관계 성립 후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규법인2014-243, 2014.8.25.)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512, 2013.9.26.)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2013.4.9.)

■ 결산 당시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대전고법2012누1424, 2012.10.25.)

■ 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

「법인세법」 상 각종 대여금 등을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이자채권을 대여금과 달리 본다는 규정이 없고 민법상 주 종물이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이자채권도 원본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2011구3137, 2011.11.3.)

■ 직원 횡령금의 대손처리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직원이 횡령하여 해당 법인이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 횡령한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강제집행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히 횡령한 직원이 무재산 무자력 또는 형 집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법규법인2011-505, 2011.12.20.)

- 특수관계자 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1103, 2009.10.9.)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1393, 2006.7.25.)

라.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1) 자료

- ① 사업연도 : 2017.1.1.~12.31.(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임)
 - ② 매출채권 등 내역
 - 받을 어음 : 41,000,000원 (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원 (부가가치세 14,000,000포함)

 - 계 : 195,000,000원
-
-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 (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다라쥬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 400,000 (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 50,000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총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 ④ 대손실적률 : 0.9%

(2) 세무조정 계산

-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받을 어음 : 21,000,000원 (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 외상매출금 : 154,100,000원 (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 계 : 175,100,000원
-
- ② 한도액 계산 = 1,751,000원 $(175,100,000원 \times \frac{1}{100})$
 - 설정율 : 1%(일반법인)와 대손실적률 0.9% 중 큰 비율임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 총당금 부인 누계액(-) : 300,000원
 - 당기대손금 상계액(-) : 400,000원
-
- 계 : 1,600,000원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충액 : 1,900,000원
 -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
- 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 발생

⑤ 조정내용 정리

- 당기대손금 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 회사설정액(1,900,000+50,000)-세무상 한도액(0001,751,000)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 * 회사보충액(1,900,000)-세무상보충할금액(1,600,000)

사업연도	2017.1.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명	(주)가나
	~ 2017.12.31.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대손충당금조정

손금 산입액 조정	①채권잔액 (②의 금액)	② 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 한도 초과액 (⑥-③)
						④ 당기계상액	⑤ 보충액	⑥ 계	
	175,100,000	(가) 1(2) ----- 100 ()	(나) 실적률 (0.9%)	(다) 적립 기준 ()	1,751,0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익금 산입액 조정	⑧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⑨ 기중 총당금 환입액	⑩ 총당금 부인 누계액	⑪ 당기 대손금 상계액 (②7의 금액)	⑫ 당기 설정총당금 보충액	⑬ 환입할 금액 (⑧-⑨-⑩- ⑪-⑫)	⑭ 회사 환입액	⑮ 과소환입 과다환입(△) (⑬-⑭)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채권 잔액	⑯계정과목	⑰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⑱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⑲ 합계 (⑰+⑱)	⑳ 총당금 설정제외 채권	㉑채권잔액 (⑲-⑳)	비고		
	받을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금조정

②2 일자	②3 계정 과목	②4 채권 명세	②5 대손 사유	②6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 손금계상액			비고
					②7 계	②8 시인액	②9 부인액	③0 계	③1 시인액	③2 부인액	
12.31.	외상 매출금	다라(주)	시효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시효 미완성 100,000
	계			400,000	400,000	300,000	100,000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③3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익금에 산입할 금액			③6 차액 Min[③3, Max(0, ③4-③5)]	③7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③3-③6)	비고
	③4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in(③, ③6)	③5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ax[0, (③-⑩-⑪)]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V 접대비

1. 기업회계

① 의 의

-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가. 접대비의 요건

- 기업회계상 접대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업무와 관련된 접대 교제 등을 위한 비용일 것
접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업무와의 관련 정도는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②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자일 것
접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법인의 주주, 출자자 및 임직원은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FAQ : 화환, 축하난 등도 접대비가 되나요?

접대비의 범위에는 접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 및 임직원은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화환 등의 상대방이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며, 거래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나. 접대비의 분류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다음의 비용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접대비로 봅니다.

(1) 교제비

- 교제비란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접대 및 향응에 사용된 통상의 비용을 말합니다.

(2) 사례금

- 사례금이란 법인이 거래처 등 고객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예컨대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의 제공,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도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이란 비록 위에서 설명한 교제비·사례금은 아니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서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자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타계정과의 분류

(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지출한 금액의 업무와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이를 기부금으로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면 이를 접대비로 합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은 해당 법인의 특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접대비	기부금
지출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업무와 관련된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제품 및 기타자산의 판매나 용역의 공급 - 원재료 및 기타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 - 사업상 수익을 가져온 자에 대한 답례 - 사업상 거래에 있어 그 거래의 성립을 위한 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지출 상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업무관련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자 -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 중개, 알선,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자 - 해당 법인의 사업분야에 대하여 지도, 감독, 통제 등의 업무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의 상대방이 기부금 인정 단체 등인 경우

(2)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 광고선전비란 상품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봅니다.

(3)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기업회계상 복리후생비란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용 등은 급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법인세법

①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법§25⑤).

가. 접대 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기증 등 접대 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 거래의 알선 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 대 비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특정 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나. 기타 접대비

(1)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법령§42②)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2)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채권포기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통칙 19의2-19의2...5).

(3) 특정 고객에 대한 광고 선전비

-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선전비 또는 특정인에 대한 기증금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 제외

(4)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 교제 등의 비용

-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 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합니다.

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법령§42①)

라.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1)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319, 2006.7.12.)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772, 2000.3.23.).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764, 2006.9.12.).

(2)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세과-2820, 2008.10.9.).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 노트 PC 등을 매장 내에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 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699, 2006.4.28.).

(3)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1484, 2000.7.3.).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 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3460, 2008.11.19.).

②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접대비 직부인

- 1회 지출금액이 1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 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조특법§126의3④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② 법법§121 및 소득세법§163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32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특법§126조의4①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 ☞ 국외지역 지출 접대비,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2012.1.1. 이후 지출분) 및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외)로서 다음 ①, 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① $1,200\text{만원(중소기업의 경우 } 2,400\text{만원}^*) \times \frac{\text{당해사업연도의 월수}}{12}$
 - * 중소기업의 경우 15.1.1.~1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2,400만원 적용
 -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수입 금액	일 반 수 입 금 액	기 타 수 입 금 액
100억원 이하	$\frac{20}{10,000}$	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 초과금액의 $\frac{10}{10,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 초과금액의 $\frac{3}{10,000}$	

※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조특법§136②).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과 ㉡를 합한 금액의 50%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법법§25①).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합니다(법칙§20①).

①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법§25① 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0% 감산율 미적용)

②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의 10% 상당액에 위의 ②금액을 합하여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다.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조특법§136③)

- 2017.12.31.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법법§25①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3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가.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접대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 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 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에 의합니다.
☞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는 2006.2.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접대비를 건설가계정 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합니다.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합니다.

나.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접대비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으로 합니다.

4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가.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①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
 - ②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나.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

- 1회 지출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법령§41②).
 - ①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인근지역 안의 유사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 ② 농·어민(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출한 접대비 →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③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현물접대비(법칙§20②)
 - ☞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재경부법인46012-155).

다.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라.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 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①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때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중인 자산 고정자산 순으로 합니다.

☞ 한도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 ② ①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frac{\text{감액계상액 잔액}}{\text{당해연도 감가상각 전의 장부가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합니다.

- ③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예규

■ 접대비의 구분(집행기준 25-0-4)

-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 ③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 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대한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 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 ⑦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국내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의 손금 여부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6030, 2017.5.25.)

■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법령해석법인-0466, 2016.6.22.)

-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법인2014-55, 2014.4.29.)

- 회사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 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백화점 입점 수수료 일부지원, 공동구매시 일정 이익률 보장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고가 인하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법인2013-249, 2013.8.30.)

-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 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세과-408, 2013.7.30.)

- 이사지원금이 분양대행을 수탁받은 회사의 손익에 귀속되는지 여부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세과-1223, 2009.11.5)

- **접대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물건 및 그 시행권을 인수하고, 인수한 미분양 물건의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 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시행사의 분양부진에 따라 공사미수금의 장기연체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한 후 기존의 발생된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법인세과-373, 2009.03.31)

- **해외연수비 등의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2163, 2008.08.27)

- **경조사비를 세무상 적격 증빙없는 현금 지출 시 손금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경조금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법§25②, 법령§41①)

마.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자료

다음은 2017.1.1.~2017.12.31.의 (주)가나의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임.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 도매 : 섬유)
- 매출액
 - 제조 도매 : 500억(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 수출 : 300억
 -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 10억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 9천만원
 - 1회 1만원 초과 지출분 : 4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32백만원*)
 - 1회 1만원 이하 지출분 : 5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40백만원)

*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2017년 8월 중 지출한 문화접대비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 : 22백만원
(전액 1회 1만원 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 : 2천만원)
- 건설가계정(건물)중 접대비 : 57백만원
 - 1회 1만원 초과 지출분 : 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 1회 1만원 이하 지출분 : 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 취득가액 : 40억원
 - 감가상각비 계상액 : 4천만원

세무조정 계산

① 세무상 접대비 해당액 :

$$159,000,000 = (90,000,000 - 8,000,000^*) + (22,000,000 - 2,000,000^*) + 57,000,000$$

* 8,000,000 및 2,000,000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접대비 직부인된 금액임.

② 접대비 한도액 계산 : 100,600,000원 (90,600,000+10,000,000)

- 일반 접대비 한도액 : 90,600,000원 (24,000,000 + (i) + (ii))

(i) 일반수입금액 기준

$$6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times 3/10,000 = 66,300,000$$

(ii)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begin{aligned} & \{ [60,000,000 + (81,000,000,000 - 50,000,000,000) \times 3/10,000] - (i) \} \times 10\% \\ & = 300,000 \end{aligned}$$

- 문화접대비 한도액 계산 : 10,000,000원

$$- \text{Min}[10,000,000, (90,600,000 \times 2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159,000,000 - 100,600,000 = 58,400,000

③ 세무조정

- 1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1회 1만원초과 지출분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일반관리비 8,000,000, 광고선전비 2,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58,4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82,000,000원+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참고 사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 10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 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text{상각비} \times \frac{\text{자산감액처리잔액}}{\text{건물(감가상각전 장부가액)}} = \text{손금불산입액}$$

-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 연도)

$$40,000,000 \times \frac{10,000,000}{4,000,000,000} = 100,000 \quad \text{손금불산입(유보)}$$

(2차 연도)

$$40,000,000 \times \frac{9,900,000}{3,960,000,000} = 100,000 \quad \text{손금불산입(유보)}$$

(3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17.3.10>

(앞 쪽)

사업연도	2017. 1. 1. ~ 2017.12.31.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169,000,000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10,000,000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159,000,000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text{만원}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월수}(12)}{12}$ (중소기업 2,400만원)		24,000,000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2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4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9,300,000	
		⑤소계	69,300,000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2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4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6,300,000	
		⑥소계	66,300,000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10/100	300,0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90,600,000	
문화접대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10,000,000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10,000,000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⑩)			100,600,000	
⑫ 한도초과액(③-⑪)			58,400,000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⑪ 중 작은 금액)			100,60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을)] <개정 2013.2.23>

사업연도	2017. 1. 1 ~ 2017.12.3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 일반수입금액	②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 합 계 (①+②)
금 액	71,000,000,000	10,000,000,000	81,000,000,000

2. 접대비 해당 금액

④ 계 정 과 목		일반관리비중 접 대 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	건설가계정 (건물)	합 계	
⑤ 계 정 금 액		90,000,000	22,000,000	57,000,000	169,000,000	
⑥ 접대비계상액 중 사적 사용경비						
⑦ 접대비 해당 금액 (⑤ - ⑥)		90,000,000	22,000,000	57,000,000	169,000,000	
⑧ 신 용 카 드 등 미 사 용 금 액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⑨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 총 초과금액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제1호)	⑪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 총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제2호)	⑬ 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⑭ 총 지출액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⑮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8,000,000	2,000,000	0	10,000,000
		⑯ 총 초과금액	40,000,000	22,000,000	43,000,000	105,000,000
	⑰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 + ⑪ + ⑬ + ⑮)		8,000,000	2,000,000	0	10,000,000
	⑱ 접 대 비 부 인 액 (⑥ + ⑰)		8,000,000	2,000,000	0	10,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V 기부금

1. 기업회계

1 의의

-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회계에서의 비용처리와 법인세법에서 일정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기부금의 회계처리

- 기부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그 금액 등을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기부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당기비용이므로(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124, 일반기준 실2.49)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합니다.
- 또한, 기부금은 기부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 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도 기부금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나. 기부금과 타계정과의 구분

- 기부금과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구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는 경우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으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 (2)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지출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보고 특정인에게 한정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봅니다.

2. 법인세법

-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의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5년으로 연장(법법§24④).

1 기부금의 종류

-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며,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대상 기부금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기부금(법법§24②)

-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종전 특례기부금(조특법§73)은 삭제되고 법정기부금에 통합되었으며,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10.12.30. 법법 §24 개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합니다(법령§36의2①)

- ④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 공립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은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법령§36의2③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 ⑤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 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령§36의2④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법령 §36의2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나.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령§36①1.)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③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④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⑤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 ⑥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⑦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⑧ ① 내지 ⑦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법령§36①2.)

-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③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법령 §36①.4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5) 법령 §36①.5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 포함)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해외지정 기부금단체"라 함)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6) 법령 §36①.6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법칙§18⑦(별표6의4)에 따른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2013.2.15.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56①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여 분기별로 공고(기획재정부(www.mosf.go.kr)»법령)공고

다. 기타기부금

- 상기 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2 기부금의 가액 등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 다만, 2011.7.1. 전에 제공하거나 기부받은 법법§24②(법정기부금) 및 조특법§73①(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하며,
 - 2011.7.1. 이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현물 기부자산의 개정 전 후 평가방법(법령§37, 2011.3.31. 개정)

구 분	2011.3.31. 전 지출분	2011.3.31.~2011.6.30. 지출분	2011.7.1. 이후 지출분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특례기부금			폐지
지정기부금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장부가액(단, 특수관계인에게 기부 시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비지정기부금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령§37②).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령§37③).

3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가. 법정기부금(법법§24②)

$$\text{한도액} = (\text{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textcircled{1}} - \text{법법§13제1호의 이월결손금}^{\textcircled{2}}) \times 50\%$$

- ① 차가감소득금액-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손+법정기부금지출액+지정기부금지출액
- ②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 ☞ 손금불산입된 법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2011.12.31. 이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2011.6.30. 이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은 1년, 2013.12.31. 이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은 3년) 이내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특례기부금(舊조특법§73①.14호 제외)

$$\text{한도액} = (\text{기부금을 손금산입 하지 않은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textcircled{1}} - \text{이월결손금}^{\textcircled{2}}) \times 50\%$$

- ① [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②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 ☞ 손금불산입된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년간(신탁재산 공익법인 기부금은 3년, 舊조특법 §73①.11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舊조특법§73④).

다. 지정기부금(법법§24①)

$$\text{한도액} = (\text{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text{법법§제1호의 이월결손금} - \text{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text{법정 또는 (구)특례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액}) \times 10\%$$

☞ 손금불산입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향후 5년(2009.12.31. 이전 지출분은 3년) 이내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있습니다.

라.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 세법에서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새마을금고, 정당 기부금 등)

4 기부금의 이월공제

- 손금불산입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1년~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 기부금 종류별로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당해 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 이월된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법법§24②)	(구)특례기부금 (조특법§73①기타)	(구)특례기부금 (조특법§73①11)	지정기부금 (법법§24①)
5년*	1년	3년	5년

*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5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법§112의2①).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작성대상

2008.12.31.까지	2009.1.1.~12.31.	2010.1.1.부터
연간 100만원 초과	연간 50만원 초과	전액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법§76⑩).

-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
-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통칙 24-0...2)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통칙 24-0...4)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 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령해석과-80, 2016.4.25.)

■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 구분 및 장부가액의 범위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법령해석과-0007, 2015.3.26.)

■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 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821 2013.7.17.)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거래대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합의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91, 2003.5.26.)

■ 부동산 무상 임대 시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143, 2002.9.6.)

6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료

- ① (주)가나의 기부금계정 금액은 10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부금 : 2017.4.1. 지출한 이재민구호금품 5,000,000원 2017.8.1. 지출한 사립대학 시설비 10,000,000원 2017.9.1. 지출한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40,000,000원
 - 지정기부금 : 48,000,000원 [2017.1.31.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 1,500,000원
-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78,500,000원
-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39,000,000원
- ④ 법법§13.1 규정의 이월결손금 : 135,000,000원
- ⑤ 사업연도는 2017.1.1.~2017.12.31.이며, 일반 영리법인임.

세무조정 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 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79,000,000
(178,500,000 + 41,500,000 - 39,000,000) + (5,000,000 + 10,000,000 + 40,000,000 + 43,000,000*)
 - * 어음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2018년 기부금이므로 손금부인
 - 손금산입한도액 : 72,000,000 = (279,000,000 - 135,000,000) × 50%
 - 한도초과액 : △ 17,000,000(한도미달) = 55,000,000 - 72,000,000
- ②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한도액 : 8,900,000 = (279,000,000 - 135,000,000 - 55,000,000) × 10%
 - 한도초과액 : 34,100,000(한도초과) = 43,000,000 - 8,900,000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2.23.>

사 업 연 도	2017.1.1.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가나
	~ 2017.12.31.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279,000,000	⑤ 손금산입액 MIN(③, ④)	55,000,000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135,000,000	⑥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③)>0, ②]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55,000,000	⑦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89,000,000
④ 한도액 {[(①-②)>0]×50%}	72,000,000	⑧ 한도초과액[(③-④)>0]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⑩-⑨)>0, ②]	
⑩ 한도액 (⑦×50%)	44,500,000	⑬ 소득금액 차감잔액 [(⑦-⑩-⑫)>0]	89,000,000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⑭ 한도초과액[(⑨-⑩)>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⑮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43,000,000	⑱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⑯-⑮)>0, ②]	
⑯ 한도액(⑬×10%)	8,900,000		
⑰ 손금산입액 MIN(⑮, ⑯)	8,900,000	⑲ 한도초과액[(⑮-⑯)>0]	34,100,00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⑳ 기부금 합계액(③+⑮)	㉑ 손금산입 합계(⑤+⑰)	㉒ 한도초과액 합계(⑳-㉑)=(⑧+⑲)
98,000,000	63,900,000	34,1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㉓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㉔기공제액	㉕공제가능 잔액(㉓-㉔)	㉖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㉗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000
2017. 1.1 ~ 12.3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000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VI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① 의 의

가.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의 개념

- 감가상각이라 함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기간 동안에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배분 과정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다양한 감가상각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도 합리적인 추정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감가상각 대상자산

(1) 건설중인자산(취득 중인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합니다(일반기준 10.34). 따라서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2) 사용중단자산

(가) 사용중단자산이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

-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에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합니다(일반기준 10.35). 즉,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내용연수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나) 사용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매각예정자산)

-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을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일반기준 10.35).

- 즉,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 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합니다.
- 단,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일반기준 10.35). 또한,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다) 취득원가

●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 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①부터 ⑨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합니다(일반기준 10.8)

- 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②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③ 설치비
- ④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 ⑥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 ⑦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 ⑧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총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 ⑨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②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 ③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예 : 직원 교육훈련비)
 - ④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①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 ②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 ③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2 내용연수

가. 유형자산

-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제38조⑤).
 - 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합니다.
 - 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경우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나. 내용연수의 추정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며, 유형자산의 경제적효익은 주로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일반기준 10.36, 실10.11).

- ①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수준
- ②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 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 ③ 생산방법의 변경 또는 개선이나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 ④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다. 무형자산의 상각

(1) 상각기간(내용연수)의 추정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합니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① 기업이 예상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이 다른 경영진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
- ② 자산의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공개된 정보
- ③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 ④ 자산이 운용되는 산업의 안정성과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 ⑤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 ⑥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 ⑦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과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예 : 관련된 리스의 만기일)
- ⑧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2) 내용연수의 결정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말하며, 법적 내용연수는 기업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일반기준 11.30).

(3) 내용연수의 제한

-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적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11.28).

3 잔존가치

가. 유형자산

(1) 중소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잔존가치는 다음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8조).
- ① 유형자산 :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 ② 무형자산 :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위의 ①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일반기준 10.33). 즉, 잔존가치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잔존가치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대상 중소기업은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의 결정에 있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31.10).
 - ② ‘①’외의 기업
대부분의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경미합니다(일반기준 10.33). 또한, 그 추정에 있어서도 불확실성도 매우 크고 또한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므로 실무상 영(0)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야 합니다(일반기준 10.33).

FAQ :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계속 잔존가액을 남겨두어야 하나요?

실무적으로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최소의 금액(min[취득가액 × 5%, 1,000])을 남겨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실물자산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부상 최소금액마저도 제거할 경우 실물자산은 존재하나 장부에서 아예 해당 라인이 제거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에 해당합니다.

나. 무형자산

(1) 일반기업회계기준

- ①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대상 중소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대상 중소기업은 무형자산의 잔존가치의 결정에 있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31.10).

② ‘①’외의 기업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일반기준 11.33).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11.33, 11.34).

4 감가상각방법

가. 중소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8조).
 - ① 유형자산 :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 ② 무형자산 :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방법을 말하며, 유형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일반기준 10.38).

(1) 감가상각 방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이 있습니다(일반기준 10.40).
 - ① 정액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
 - ② 체감잔액법(예 : 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
 - ③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 예상조업도 혹은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

(2) 감가상각방법의 결정 및 적용

-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소멸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합니다(일반기준 10.40). 따라서,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원칙적으로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일반기준 10.39).
- 다만,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준 10.39)

2. 법인세법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법법§23, 법령§24~34).

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예외 → 별도 설명).
 -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상각가능합니다.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법인계상감가상각비	=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 세법상상각범위액		(-) 시인부족액	⇒ 상각부인액추인

2 감가상각 자산

가. 감가상각 대상자산(법령§24①)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건물및그부속설비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 및 식물 6.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권(합병 또는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댐사용권 5. 개발비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 <p>* 항만시설관리권은 2012.2.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p>

(1) 영업권의 범위

-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법칙§12①.1)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법칙§12①2)
 - ☞ 종전 합병 또는 분할 시의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삭제

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법령§24③)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 제외)
- 건설 중인 것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토지, 서화, 골동품 등)

다. 기 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법령§24④).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 등과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합니다(법칙§12③).
- 설치 중 또는 시운전기간 중의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나,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합니다(법칙§12④).



-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

내국법인이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 및 평준화됨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규법인2013-4, 2013.3.20.)

- K-IFRS 적용하는 경우 공구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공구(금형을 포함한다)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법인-758, 2012.8.6.).

- 타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 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시설은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1138, 2009.10.15.)

- 개발비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법인-132, 2005.2.16.)

- 판촉용 CD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법인이 판촉용 CD(Compact Disc)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하 “CD-Title”라 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CD-Title이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법인46012-641, 2002.11.27.)

3 감가상각 방법

가.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법령§26①, ④)

구 분	신고 시 상각방법	무신고 시 상각방법
①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 (아래 ③,⑤,⑥,⑦ 제외)	정액법	정액법
②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 (아래 ④ 제외)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정률법
③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 15.2.3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해저광물채취권 포함)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중 선택	생산량비례법
⑤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
⑥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자산의 사용 수익기간(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상각 * 기부자산의 멸실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액 일시상각	신고 시 상각방법과 동일
⑦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신고 시 상각방법과 동일

- 감가상각 방법

- ① 정액법 : 취득가액×상각률

- ② 정률법 : (취득가액-기 상각액*)×상각률

-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법법§27의2②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

- ③ 생산량비례법

- 1. 광구에 속한 자산 : 취득가액×(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총 채굴예정량)

- 2. 폐기물매립시설 : 취득가액×(당해 사업연도의 매립한 량÷매립예정량)

나.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

- 법령§26①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② 위 외의 법인이 법령§26①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 종류가 동일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1) 신청기한

-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하며(법령§27②),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변경사유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법령§26⑤)하여야 하나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령§27①).

-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2010.12.30. 신설

- 상기 ‘⑤’의 사유로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구 분	자산 계상 법인	감가상각 계상 법인
금융리스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
운용리스	리스회사	리스회사

☞ 2011.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는 K-IFRS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리스분류의 불일치로 인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리스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합니다(법령§24⑤).



■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41, 2012.1.12.)

■ **사업장별 업종별 감가상각의 적용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같은 항 같은 호에 규정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961, 2004.9.22.)

4 상각범위액

가. 상각범위액의 계산

구 분	계산방법
정액법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상각률 (1/n : 내용연수)
정률법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당기 감가상각비 계상 전)×상각률
생산량비례법	세무계산상 취득가액 × $\frac{\text{채굴한 양(매립한 양)}}{\text{총채굴예정량(매립예정량)}}$

나. 사업연도 중 취득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법령§26⑨)

(1)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자산

-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text{감가상각범위액} = \text{연상각범위액} \times \text{사용월수} \div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

(2)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없음

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법령§26⑧)

$$\text{상각범위액} \times (\text{당해 사업연도 월수} \div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합니다.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령§28②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5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가. 취득형태별 취득가액 계산

취 득 형 태	취 득 가 액
매입한 고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자가 제조(건설)한 고정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적격합병 적격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80의4① 및 §82의4①에 따른 장부가액(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물적분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적분할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현물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그 외의 경우 : 해당 주식의 시가
출연재산에 대해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함)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 시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D/A이자, Shipper's Usance이자, Banker's Usance이자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

다. 재평가자산 등의 취득가액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당기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집행기준 23-31-2)

구 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추상적 구 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구체적 구 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마. 잔존가액(법령§26⑥, ⑦)

-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합니다.
 -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 ☞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 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1725, 2017.10.20.)

■ 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 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등

대규모의 생산시설과 여러 공정을 거쳐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생산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계장치와 유사한 성능의 기계장치를 관련 생산라인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 당해 증설되는 기계장치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정상 제품 등의 생산에 사용하는 날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증설하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증설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서면2팀-1436, 2006.7.27.)

■ 진입도로 건설 후 기부 시 처리방법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413, 2004.3.10.)

■ 건물신축 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서이46012-12008, 2002.11.5.)

6 내용연수와 상각률(법령§28)

가. 자산종류별 기준내용연수

-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② 무형고정자산	:	" [별표 3]
③ 건축물 등	:	" [별표 5]
④ 업종별자산	:	" [별표 6]

- 건축물 부속설비(냉난방 급배수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내용연수의 신고 등

-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열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령§28①.2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법령§28②)

- 법법§6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frac{\text{내용연수} \cdot \text{신고내용연수 또는} \\ \text{기준내용연수}}{\times \frac{12}{\text{사업연도의 월수}}}$$

라.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법령§29)

- 법인은 특정 사유 해당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14.10.1.부터 '16.6.30.까지 ('16.7.1.부터 '17.6.30. 까지도 연장) 설비투자 자산(운수업 또는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등을 취득하는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령§28 ⑥, 조특법§28의2 신설).
 - 2년 연속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 영위 기업이 '15.1~'15.12.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차량운반구(운수업 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등 설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신고조정 가능)(조특법§28, 조특법령§25)

내용연수 특례 적용사유(법령§29)

- ①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②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생산설비(건축물 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③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④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⑤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 ⑥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마.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법령§29의2)

(1) 대상자산

- 중고자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적용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의 내용 연수가 경과한 자산
- 합병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합병 등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2010.12.30. 법령§29의2② 신설)

(2)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 (예 : 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내용연수변경 신고서 제출기한

-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 : 합병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4)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법령§29의2②)

-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계산시 취득가액은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 * 미상각잔액 : 양도당시의 시가- 자산조정계정(법법§80의4①, 법법§82의4①, 법법§84④, 조특령§35⑩) - 양수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
-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통칙 23-28...4)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 표상 각 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특례내용연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 법규-1464, 2012.12.11.)

■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내국법인이 구축물의 부속설비(급 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992, 2009.9.14.)

-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야 함(서면2팀-2007, 2006.10.4.)

7 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가.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법령§32①)

(1) 시인부족액

-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됩니다.

(2) 상각부인액

-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합니다.

부인누계액	당기 상각범위액	당기 회사상각액	당기 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30)을 한도로 손금 추인합니다(차액 70은 차기이월).

나.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법령§32⑤, ⑥)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당해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 \times \frac{\text{양도부분의 가액}}{\text{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다.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법령§32③, ④)

- 감가상각과 평가증(보험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①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며,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합니다.
 - ②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사례

구 분	계	건 물	기계 소계	기계 1	기계 2	비 품
세무상 상각범위액	150,000	100,000	30,000	10,000	20,000	20,000
회사계상 상각액	165,000	120,000	28,000	12,000	16,000	17,000
시부인액	15,000	20,000	△2,000	2,000	△4,000	△3,000

⇒ 한도초과액 22,000원 손금불산입(유보)

라.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1)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 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상각범위액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무신고 시 5년 균등상각)
- 미상각 개발비의 처리 :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71⑤).
 - ①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 ②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 2012.2.2.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합니다(법령§26①). 다만, 사용수익기간 신고내용연수 기간 중 멸실·계약해지된 경우 미상각 잔액을 상각합니다.

(3) 창업비

-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2002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균등액 상각)

(4) 개업비

-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개업준비기간 중 사업 인 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에 포함합니다.)

(5)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

마. 지배 종속회사 간의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종속회사 간의 사업양수 양도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시 인수가액을 장부가로 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차례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B/S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시가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령§24 내지 §34(감가상각 관련 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2.12.30.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령§19. 5호의2, 부칙§3).

바. 즉시상각의 의제(법령§31)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①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②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다음의 수선비 지출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 ①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② 영화필름 공구(금형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구, 가정용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③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3원 미만인 것
- ④ 전화기(휴대용전화기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포함)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전화기(휴대용전화기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포함) 추가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일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합니다(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사. 감가상각의 의제(법령§30)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감면 받은 경우에는
 -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이전은 개정 전 참조)



■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778, 2013.7.5.)

- 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청소용품인 대걸레와 바닥용 깔개(이하 “청소용품 등”)를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법인2012-369, 2012.9.24.)

- 결손금 또는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625, 2009.5.28.)

- 겸업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0705, 2003.4.4.)

- 수선비 지출액의 300만원 미만 판단기준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300만원”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자본적 지출 해당액 200만원만을 자본적 지출로 함(재경원 법인 46012-121, 1996.9.11.)

8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법법§23②)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 (선택사항).

가. 신고조정 요건 및 대상자산

(1) 적용요건 :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

(2)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 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사용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않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②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 ③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④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 유형고정자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 자산은 신고 조정할 수 없습니다(법인세과-222, 2012.3.28.).

나. 신고조정 적용방법

- 결산서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다.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1)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아래의 '동종자산'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법령§26의2)

- 기준연도 : 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동종자산 : 기준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기존보유자산)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 구분)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 구분, 해당 업종을 K-IFRS 도입 이후에도 계속 영위할 것에 사용되는 것)
 - 기준상각률 : K-IFRS 도입 이전 상각률
-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비가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법§23②1호).
 - (한도) 다음의 ①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산입합니다.
 -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동종자산의 취득가액합계액」의 평균액
 -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 × 기준상각률*
 -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합계액」의 평균액
 -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 기준상각률은 ①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기준상각률)-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① 의 정률법과 같이 적용

(2) 2014.1.1. 이후 취득 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결산
서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법§23②2호)
 - (한도) 다음 ①과 ② 금액 중 큰 금액(법령26의3③)
 - ①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 ②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 * IFRS 도입 전 감가상각비가 ① 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9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법령§33)

-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감가상각시부인 명세서,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VII 지급이자

1. 기업회계

1 의의

가. 이자비용의 의의

- 이자비용이란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지급하는 대가로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과 사채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정의 이자와 할인액을 말합니다. 또한 어음의 개서나 부도 등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 이후 지급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도 차입금에 대한 대가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이자비용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 기업이 장기연불조건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신용매출기간 종료일 전에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한부 수출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지급하는 환가로 및 할인료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이자비용의 회계처리

- 일반적으로 이자비용과 사채이자 는 후 지급조건인 것이 대부분이나, 할인료에 있어서는 어음의 할인시점에 해당 어음금액에서 이자액에 상당하는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취하게 되므로 선급조건이 됩니다.
- 따라서, 기말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자비용 중 기간계산에 의한 미지급이자나 선급이자를 계상함으로써 기간손익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법

-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비에 해당 합니다.
- 그러나, 특정 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지급이자의 범위

(1) 지급이자의 범위(집행기준 28-0-2②)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 받은 미지급이자	1. 상업어음 할인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2)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법령§53④)

- 금융회사(법령§61②) 등이 차입한 다음 각 호의 금액
 - ①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④ 수신자금
-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순서(법령§55)

-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 ③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의 이자
- ④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금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금금 처분손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금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2012, 2008.8.14.)

■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인46012-1076, 2001.11.23.)

■ 만기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함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함(법인인46012-441, 1998.2.20.)

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법법§28①.1, 법령§51①)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합니다.

4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등(법법§28①.2, 법령§51②)

- 다음의 채권 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④ 금융회사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03 및 04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징수세액(소득처분 기타사외 유출)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5 건설자금이자(법법§28①.3, 법령§52)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자본화 강제) 및 일반차입금(자본화 선택)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부대 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의 판정〉(법령§52⑥)

- ① 건 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과 건설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 중 빠른 날
- ② 토 지 :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날
※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통칙 28-52...1)
- ③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 : 사용개시일

다.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차입금이자 및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강제적으로 자본화하여야 하며, 일반차입금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 ① 특정차입금에 대한 자본화(법법§28①(3))
 -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되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와 운영자금에 전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 하지 아니합니다 (법령§52②,③).
- ②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금액 계산방법(법법§28②) : $\text{Min}[\text{㉠}, \text{㉡}]$
 - ㉠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 ㉡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해당 사업연도 특정차입금의 적수)/해당 사업연도 일수×자본화 이자율*

* 자본화 이자율=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해당 사업연도 일반차입금의 적수/해당 사업연도 일수)

- 또한,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및 할인료, 건설기간 중의 사채할인차금상각액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포함됩니다.
-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52③,④).
- 특정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법령§52②).

라.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① 비상각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자산의 양도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함.
 - ②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해당분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 건설중인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이 완료되면 기왕의 상각 부인액으로 보며 그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됨.

6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합니다(법법§27).

가.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법령§49)

(1)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규칙§26②).
 -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 허가 등으로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법칙§26⑤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합니다.

(2) 동 산

-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
-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나. 가지급금 등의 범위(법령§53①)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함은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법령§61②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합니다.
 - ☞ 법칙 제4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은 제외

다.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

-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은 법령§72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법령§53③).
 -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 위의 “취득가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법령§53③ 후단).

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법령§53②)

-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지급 이자} \times \frac{\text{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text{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text{총차입금 적수}}$$

-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
- ㉡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합니다.
-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급이자의 범위 등

(1)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상당액의 범위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지급이나 총차입금은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 계산

-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그 합계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적수로 계산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보유한 업무무관자산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이전에 취득 대여하여 이월되었거나 • 당기에 신규 취득 대여하였거나 • 사업연도 중에 양도 회수된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 } | 보유기간 일수에
대하여 적수 계산 |
|--|---|-----------------------|

※ 2001.3.28. 규칙§26⑨의 개정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 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나(동산 제외),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합니다.

(3) 총차입금의 계산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나,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①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차입금은 물론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 수출금융 등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와 같은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②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이자로 계상한 Banker's Usance 등 연지급수입 이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합니다(법령§72⑤).

$$\text{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이자율별 지급이자} \times \frac{365}{\text{연이자율}}$$

바.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법칙§27)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조정에 의한 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제외)

②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 계산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등) × 종전사업연도의 세율
-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취득 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집행기준 27-49-4)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해당 부동산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부동산 용도별 유예기간 및 기산일(집행기준 27-49-2)

- ① 부동산의 용도별로 다음의 유예기간 중에는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구 분	유예기간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써 같은 법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건설계획기간

- ②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함.
- ③ 분할신설(분할합병)법인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한함.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집행기준 28-53-2)

-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③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로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해당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업무용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 임대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이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잔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임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임대하는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임대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법규과-171, 2014.2.25.)

■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및 부동산매매업자 구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709, 2009.6.11.)

-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토지 취득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8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서면2팀-1284, 2006.7.11.)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나대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cm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5, 2002.1.7.)

- **건축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서 건축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012-44, 2001.2.2.)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 이전일로 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52, 2000.3.31.)

7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지급이자총액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비 고
20%	5,000,000*	9,125,000,000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임 (원천징수세액 1,375,000원 포함)
13%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계	27,800,000	85,775,000,000	

-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 2017.4.20. 가 지 급 7,000,000
 - 2017.8.15. 가지급금회수 5,000,000
- 토지계정 : 임대용 나대지 20,000,000(취득가액, 해당기간 : 2017.1.1.~2017.12.31.)
- 사업연도 : 2017.1.1.~2017.12.31.

세무조정 계산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625,000(상여)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1,375,000(기타사외유출)
-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22,800,000 \times \frac{(7,300,000,000 + 1,097,000,000)}{(76,650,000,000)} = 2,497,737$$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497,737(기타사외유출)

사업 연도	2017. 1. 1. ~ 2017. 12. 31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① 지급 이자	적 수				⑥ 차입금 (=⑬)	⑦ ⑤와 ⑥중 적은금액	⑧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⑦÷⑥)	
	② 업무무관 부 동 산	③ 업무무관 동 산	④ 가 지 급 금 등	⑤ 계 (②+③+④)				
22,800,000	7,300,000,000		1,097,000,000	8,397,000,000	76,650,000,000	8,397,000,000	2,497,737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⑨ 이자율	⑩ 지급 이자	⑪ 차입금 적 수	⑫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⑮ 건설자금이자 등		차 감	
			⑬ 지급 이자	⑭ 차입금 적 수	⑯ 지급 이자	⑰ 차입금 적 수	⑱ 지급이자 (⑩-⑬-⑯)	⑲ 차입금적수 (⑪-⑭-⑰)
20%	5,000,000	9,125,000,000	5,000,000	9,125,000,000			0	0
13%	7,800,000	21,900,000,000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15,000,000	54,750,000,000
합 계	27,800,000	85,775,000,000	5,000,000	9,125,000,000			22,800,000	76,650,000,000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을)](2006.3.14.개정)

사 업 연 도	2017. 1. 1. ~ 2017.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가나
---------	-----------------------------------	---	-------	-------

		①연월일	②적 요	③차 변	④대 변	⑤잔 액	⑥일수	⑦적 수
1.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2017.1.1	전 기 이 월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계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2. 업무무관 동산의 적수								
	계							
3. 가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⑧	2017.4.20	가 지 급	7,000,000		7,000,000	117	819,000,000
		2017.8.15	회 수		5,000,000	2,000,000	139	278,000,000
	계			7,000,000	5,000,000	-	256	1,097,000,000
⑨ 등 가 의 적 수								
	계							
4. 그밖의 적수								
	계							
5. 자기자본 적수계산								
	⑩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⑪ 재무상태표 부채총계	⑫ 자기자본 (⑩ - ⑪)	⑬ 사업연도 일 수	⑭ 적 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 기업회계

① 의 의

가. 각 용어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화환산손익 계상시 적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

-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말합니다.

(2) 환율

- 환율은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현물환율은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마감환율은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을 의미합니다.

(3) 공정가치

-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즉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4) 화폐성항목

- 화폐성항목은 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 부채를 말하며,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총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합니다.

(5) 비화폐성항목

-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하는 총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합니다.

나. 외화거래의 인식

-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외화거래는 다음과 같이 인식합니다(제42조①).
 - ①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 ②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 자산, 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 ③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 핵심 포인트

-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 (대부분 매매기준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합니다.
- ②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일반기준 23.8)

다.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환율변동효과

(1) 매 보고기간말

- 매 보고기간말 화폐성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예시 :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합니다(일반기준 23.9, 23.10).

(2) 결제시점

- 화폐성 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계정과목 예시 :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합니다(일반기준 23.10).

라. 해외사업장의 환산

-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일반기준 23.15)
 - ①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 ② 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합니다.
 - ③ 위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한편,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23.14에 따라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킵니다. 그 외의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 법인세법

1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 종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외화자산 부채 및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하여만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하여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추가
-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법령§73, 2010.12.30. 개정).

- ☞ 금융회사 이외 법인의 경우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외화자산의 평가방법】

- 은행 등 금융회사 : ①, ② 중 선택

구 분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통화선도 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비은행 일반법인 : ①, ② 중 선택

구 분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헷지목적의 통화선도 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1) 평가차손익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76④).
-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상환차손익

- 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76⑤).
-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3) 평가방법의 신고

-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하거나,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 최초로 동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및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법령§76②,⑥,⑦)
 -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평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령§76③).



-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세과-865, 2009.7.29.)

집행기준 42-76-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①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대상 자산	평가 방법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사업연도종료일 매매기준율 등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다음의 방법 중 신고한 방법(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②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 자산	평가 방법
화폐성외화자산 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1.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 계약체결일)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2호 적용이전에는 1호를 적용함)

집행기준 42-76-2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부채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구분	원화 환산 방법
1.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자산 부채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 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따른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른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 법인세법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또는 처분손실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법 §27의2, 법령 §50의2).

☞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방식 합리화

①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가.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 제외되는 승용자동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법령§50의2②)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법령§50의2④)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부칙 제14조, 제26981호)
-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손금산입 방법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가. 손금인정요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상 확인되는 업무사용 비율 만큼 인정(원칙)

나. 손금인정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500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1천만원(500만원)* 한도내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③)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합니다.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1천만원(500만원) × (보유월수 ÷ 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천만원(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 업무사용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령§50의2⑥)

③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가. 감가상각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상각합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차량은 리스로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되,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합니다.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산입 한도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③)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합니다.
 -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800만원(400만원) × (보유월수 ÷ 사업연도 월수)
 -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③)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합니다.
 -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1천만원(500만원) × (보유월수 ÷ 사업연도 월수)
 -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천만원(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업무사용금액 없음
- *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함

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금액

다.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업무외 사용금액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합니다.
-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400만원)]초과액은 유보 처분합니다.
 - * 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다(법령§106①3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다(법령§106①3다)

5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손금불산입

가.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③)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합니다.
 -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나.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 적용시기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합니다.



-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령해석과-0698, 2017.9.26.)

-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 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령해석과-3465, 2017.3.9.)

-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

「법인세법」 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세과-1819, 2016.7.12.)

-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법령해석과-2338, 2016.7.18.)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법령해석과-0539, 2016.11.21.)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처리 기준서

N a t i o n a l T a x S e r v i c e

<http://www.nts.go.kr>



제4장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I. 기업회계
- II. 법인세법

제 4 장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은 크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으로 구분됩니다.
-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역사적 원가주의 입장에서 자산 부채의 평가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조세목적상 예외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장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I. 기업회계'에서 각 자산별로 의의와 취득 평가를 설명하고, 'II. 법인세법은 자산 전반의 취득 평가에 대한 일반원칙과 예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 자산의 취득 보유 처분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회계 세무는 이 책 제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기업회계

1. 당좌자산

① 의의

-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당좌자산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합니다(제7조①).
-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됩니다(제7조②).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 중 재고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당좌자산 내에 별도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반드시 개별표시하여야 합니다.

당좌자산의 예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투자자산 • 매출채권 • 선급비용
- 미수수익 • 미수금 • 선급금

②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 정의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의 계정분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유가증권 중에서 조건을 충족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전신탁 어음관리계좌, 신종기업어음CP, 중개어음, 표지어음 등	주식, 채권, 수익증권 자사주펀드, 투자일임자산 등

* 계정과목표시는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됩니다.

다. 현금성자산의 정의

- 현금성자산이란 현금의 단기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서 첫째, 큰 거래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둘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다만, 상환조건이 없는 주식 등은 제외)을 말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취득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② 취득당시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③ 환매채(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

라. 계정과목분류의 정확성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CP 등
- 유가증권(실지계정과목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마. 현금성자산 구분

- 취득당시에 만기(상환일)가 3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말하므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상환일)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 외화예금 외화환산

(1) 적용환율 : 보고기간 종료일의 적정한 환율

-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일자 : 보고기간 종료일과 그 익일의 환율 중 선택 적용

- 논리상으로는 보고기간 종료일에 거래된 환율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그 익일에 공시하는 환율이 타당하나 실무상의 문제로 보고기간 종료일 아침에 발표되는 기준환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단,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환산손익처리

- 전액 영업외손익 중 외화환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실무상 유의사항

(1) 현금실사 시 현금과부족액

- 보고기간 종료일에 현금실사하여 과부족액은 원인규명하고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2)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의 상계금지

- 은행별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의 잔액은 회계연도말에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기합니다. 즉 당좌예금잔액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당좌차월잔액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3) 선일자수표

- 선일자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의 감소가 아닌 지급어음으로 처리해야 되며, 보유하고 있는 선일자수표도 받을어음으로 처리합니다.

(4) 미인도수표

- 발행된 수표가 은행에 미인도되면 수표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③ 단기금융상품

가. 정의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나. 계정과목의 분류

(1) 계정과목분류의 정확성

- 정기에금·정기적금·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신종기업어음(CP)·증개어음·표지어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실지 대차대조표상 표시는 단기투자자산으로 표시됩니다.

(2) 장 단기구분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만 해당되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합니다.

4 유가증권

가. 정의

(1) 정의 및 대차대조표상 표시

-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됩니다.

(2) 지분증권

-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 콜옵션 또는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3) 채무증권

- 발행자에 대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등(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을 말합니다.

(4) 대차대조표상 표시

-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단기투자 자산으로 표시하고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 증권으로 표시합니다.

나. 취득원가와 취득시기

(1) 취득원가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되 취득유가증권의 공정가치와 취득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취득시기

-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 단,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다. 분류 및 평가

(1) 분류

- 유가증권의 취득목적과 보유의도 및 능력에 따라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보유기간에 따라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2)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
-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 단기적 이익목적으로 운용되는 증권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유가증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분증권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 될 수 없습니다.

(3)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해 정해지고(변동이자율 조건부 포함)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4)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5) 각 유가증권의 평가

- 유가증권의 분류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손익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유목적	계정과목	평가	평가손익	대차대조표 표시
지분 증권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 ^{주6)}	당기손익 ^{주2)}	유동자산
	그 외 ^{주1)}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주6)}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주3)}	유동자산/ 투자자산
채무 증권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 ^{주6)}	당기손익 ^{주2)}	유동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	상각후 취득원가 ^{주4)}	-	유동자산/ 투자자산
	그 외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주6)}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주3)주5)}	유동자산/ 투자자산

주1)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치의 측정이 가능해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불가능

주2) 금융기관의 평가손익은 영업손익, 일반기업의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

주3) 처분 또는 감액손실 인식시 당기손익에 대체

주4) 채무증권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할인 또는 할증차금은 최초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주5)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 후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합니다.

주6) 공정가치의 평가

구분		공정가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시장가격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① 관계법령에 의해 평가한 가액 ②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평가기관이 합리적 평가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
	그 외	취득원가
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① 미래현금흐름을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사례

1. 자료

(주)국세는 장기보유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 (1) 2017.1.3. 당사는 상장회사인 갑회사의 주식 1,000주(지분율 10%)를 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동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부대비용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 (2) 2017.8.31.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을회사의 주식 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 (3) 2017.12.31. 현재 갑회사 주식의 증가는 주당 22,000원이며, 을회사 주식의 증가는 주당 8,000원이다.
- (4) 2018.3.31. 당사는 갑회사로부터 주식배당 5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받았다.
- (5) 2018.5.15. 당사는 을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8,000원에 추가 취득하였다.
- (6) 2018.10.30. 당사는 을회사의 주식 200주를 주당 12,000원에 매각하였으며, 동 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수료 36,000원을 지급하였다.
- (7) 2018.12.31. 현재 갑회사 주식의 증가는 주당 18,000원이며, 을회사의 주식의 증가는 주당 4,000원으로 하락하였는바, 을회사 주가의 하락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8) 당사는 주식의 단가산정과 관련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도 이동평균법이다.

2. 회계처리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만 인정되므로 기업회계상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및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무조정
평가	평가이익 인식	익금산입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기타 / 익금불산입 · 매도가능증권 · △유보
	평가손실 인식	손금산입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기타 / 손금불산입 · 매도가능증권 · 유보
손상차손 인식		손금불산입 · 매도가능증권 · 유보
손상차손환입 인식		익금불산입 · 매도가능증권 · △유보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유보(또는 △유보)잔액을 손금(또는 익금)산입 • 관련 미실현보유손익을 익금(또는 손금)산입

(1) 2017년

1) 회계처리

① 2017.1.3.(갑회사 주식 취득)

(차) 매도가능증권(갑) 20,4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20,400,000

② 2017.8.31.(을회사 주식 취득)

(차) 매도가능증권(을) 5,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5,000,000

③ 2017.12.31.(기말평가)

(차) 매도가능증권(갑) 1,600,000^{주1)}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6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000,000 (대) 매도가능증권(을) 1,000,000^{주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1) $1,000\text{주} \times @22,000 - 20,400,000 = 1,600,000\text{원}$

주2) $500\text{주} \times @8,000 - 5,000,000 = (-)1,000,000\text{원}$

④ 대차대조표상 표시

대차대조표상에는 매도가능증권이 아닌 장기투자증권으로 표시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된다.

(2) 2018년

1) 회계처리

① 2018.3.31.(주식배당)

없음. 단, 주식수와 종목 등에 대하여 비망기록을 한다.

② 2018.5.15.(을회사 주식 추가취득)

(차) 매도가능증권(을) 8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800,000

③ 2018.10.30.(을회사 주식 매각)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2,364,000^{주3)} (대) 매도가능증권(을) 1,600,000^{주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33,333^{주5)}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30,667

주3) $200\text{주} \times @12,000 - 36,000 = 2,364,000\text{원}$

주4) $(500\text{주} \times @10,000 - 1,000,000 + 800,000) \times 200\text{주}/600\text{주} = 1,600,000\text{원}$

주5) $1,000,000 \times 200\text{주}/600\text{주} = 333,333\text{원}$

④ 2017.12.31.(기말평가)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600,000 ^{주7)}	(대) 매도가능증권(갑)	3,100,000 ^{주6)}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500,000 ^{주7)}		
(차)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266,667 ^{주8)}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666,667 ^{주9)}
(영업외비용)		매도가능증권(을)	1,600,000 ^{주9)}

주6) $1,050\text{주} \times @18,000 - 22,000,000 = 3,100,000\text{원}$

주7) 평가 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잔액 1,600,000원을 먼저 상계한 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을 추가로 인식한다.

주8) 손상차손 인식액

= (취득가액 - 공정가치) - 전기까지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

= $(5,000,000 + 800,000) \times 400\text{주} / 600\text{주} - 400\text{주} \times @4,000$

= 2,266,667원

주9) 손상차손액이 평가손실잔액보다 크므로 우선 평가손실액을 손상차손으로 대체한 후 차액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라. 실무상 유의사항

(1) 유가증권 통제상실

-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을 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합니다. 이때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는 양수자가 매수한 유가증권의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때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2) 단가산정

- 개별법(채권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합니다.

(3) 종목구분

구 분	회계처리	
보통주와 우선주	별개 종목으로 회계처리	
유상신주 발행 시	신 구주 구분 거래	회계연도 중에는 별개 종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지분증권 발행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시 동일종목으로 보아 1주당 장부가액을 산정. 단, 배당기산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한 경우 동일종목으로 회계처리
	그 외	동일종목으로 회계처리
무상신주 발행 시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아 회계처리 없음. 다만, 구주의 장부가액을 신 구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1주당 장부가액을 수정	

(4) 처분손익

$$\text{유가증권 처분손익} = \text{취득자산 공정가치} - \text{양도 유가증권 장부가액} \\ - \text{새로 인수한 채무 공정가치} \pm \text{미실현보유손익}$$

(5) 배당금수익의 회계처리

-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주식발행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인식합니다.

(6) 교환거래 시 회계처리

-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합니다. 한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해외증권시장의 상장주식은 거래일의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지급한 비상장주식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합니다(한회연02-042, 2002.2.22.).

(7) 손상차손

-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말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손상차손 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 ①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 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②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가증권의 재분류

-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①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②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③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합니다.

5 매출채권

가. 대손충당금설정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합니다(제7조③).

(1) 설정대상채권

- 매출채권, 장·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회사채 등(사모사채 등) 대손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취채권이 대상채권이 됩니다.
- 매출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하여 매출채권이란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이 중요하다 판단되면 각각 독자적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손추산방법

- 개별적으로 채권의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 과거의 평균대손율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3) 회계처리

- 최초설정 시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
(상거래 발생분 : 판매비와관리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		
(영업외비용)			

(나) 미수금 계정과의 구분

-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수령한 어음은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2) 매출채권의 양도 할인구분

(가) 매각, 차입거래구분

- 차입거래로 구분 시는 차입금으로 처리되어 회계연도말에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 선급비용계상 여부

- 매각거래 회계처리시 종전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용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하므로 회계연도말에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3) 대손추산방법

- 개별적인 추산방법 또는 과거 대손경험률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며 각각의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도 됩니다.

(4) 보충법적용

- 대손충당금설정은 보충법을 적용하며 총액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부도어음의 처리

- 회계연도말 부도어음에 대하여 회수불능 판단 시는 대손으로 처리하고 회수가능 판단 시는 매출채권(장기로 판명시는 장기매출채권)으로 처리합니다.
- 즉 부도어음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발생 시의 계정과목(매출채권 등)을 계속 사용하므로 계정재분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회신 1999.11.9.).

(6) 대손처리된 채권의 회수처리

-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아닌 대손충당금을 회복(증가)하는 처리를 합니다.

6 대여금

가. 단기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한 금전채권 중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합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

- 원금,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상환기일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말합니다.

(2) 회수기한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분은 단기대여금으로, 1년 후에 도래분은 장기대여금으로 처리(대여금 중 분할회수분의 처리에 유의)합니다.

(3) 계정과목 사용 및 대차대조표상 표시

- 관계회사나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도 별도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대여금에 포함하고 동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실제 대차대조표상 표시는 단기투자자산에 단기예금 등과 함께 포함하여 계상합니다.

(4) 원천징수세율 : 25%

-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시는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5%의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 없음)이 적용됩니다.

나. 미수수익계상

- 회계연도말 현재 약정에 의한 이자수령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미수수익을 계상하여 이자수익으로 처리합니다.

$$\text{미수수익계상액} = \text{대여금액} \times \text{약정이자율} \times \frac{\text{대여일수}}{365}$$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시기가 경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은 현금수취시점에서 인식합니다.

다. 특수관계 이외 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이자수익에 대한 처리

(1) 이자율 및 이자지급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에 따라 이자수익 처리하며 회계연도말에 기간경과분에 대해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는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현금 수취 시 계상합니다.

(2) 약정이 없는 경우

-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7 미수수익 및 미수금

가. 미수수익

- 외부에 역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식·계상한 수익을 말합니다.

(1) 발생주의원칙

-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미수수익 인식·측정

-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3) 확정되어 있는 금전채권

- 미수금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확정된 채권으로서 보통 일 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수익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도 대가수령의 기일 전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 되지만, 당해 대가수령의 기일이 경과한 다음에는 확정채권인 미수금이 됩니다(일반기준 실2.27).

나. 미수금

- 미수금이란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이란 유형자산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입니다.

채권은 일반적·일상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래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외상매출금과 구별하여 당좌자산인 미수금계정에 처리합니다.

2. 재고자산

1 정의

-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합니다(제9조①).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됩니다(제9조②). 또한 재고자산 평가총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 대조표에 표시합니다(제9조③).

재고자산의 예

- | | | |
|-------|-------|-------|
| • 상품 | • 제품 | • 반제품 |
| • 재공품 | • 원재료 | • 저장품 |

(1)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재고자산은 ①상품, ②제품, ③재공품, ④원재료, ⑤저장품, ⑥기타의 재고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합니다.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공구 및 비품은 당기 생산 과정에서 소비 또는 투입될 품목에 한하며,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면 고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2) 제품

- 제품이란 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광업·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 또한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조부문을 가지고 그 제조 한 물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것이 제품이 됩니다.

(3) 반제품

- 제품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일부의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일정한 제품으로 서는 미진한 것이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가능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합니다.
- 공정별종합원가계산에 있어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공정을 종료한 중간 생산품을 말하므로 전공정의 제조작업을 끝마친 최종생산품인 제품과 구별되고, 판매할 수도, 별도로 저장할 수도 없는 재공품과도 구별됩니다.
- 반제품의 취득원가는 공정별의 총원가를 당해 공정의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배분하고 전자의 공정완성 품원가로부터 다음 공정에의 대체품원가를 공제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이러한 반제품을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일반기준 7장).

(4) 저장품

- 저장품이란 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될 뿐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소모성재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을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소모품은 연료, 사무용품 등을 의미하고 소모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가액이 비교적 낮은 공구·기구·비품을 말합니다.
- 저장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 저장품을 매 입한 경우에 저장품이라는 자산계정을 설정하여 그 차변에 기입하여 두고 그 소비액 을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당해 비용과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 (2) 그 다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직접 당해 비용과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잔액을 산정하여 자산계정에 계상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

(5) 미착상품

- 미착상품은 결산일 현재 도착하지 아니한 상품을 말하며 선적지인도기준에 의한 상품구입의 경우에는 운송 중이라도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되며 목적지인도기준에 의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됩니다.
- 기업회계상 수입품을 미착품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구매계약조건 등에 따라 회사가 상품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입니다.
- 미착상품이란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아직 운송 중에 있어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말합니다. 기말시점에 미착상품이 있을 경우 기말재고자산에의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선적지인도기준과 목적지인도기준이 있습니다.
- 선적지인도기준이란 선적시점에서 상품의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매출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반면, 목적지인도기준이란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에서 상품의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미착상품의 구분

구 분		선적지인도기준	목적지인도기준
매입자	매 입	당기매입	차기매입
	당기기말재고	포 함	제 외
판매자	매 출	당기매출	차기매출
	당기기말재고	제 외	포 함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내 및 국제 거래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이다. 10년마다 개정되기에 인코텀즈 뒤에 개정년도를 밝히고 있다. Incoterms는 물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정형화된 국제표기이다. 총 11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 중에서 선택하여 가격을 결정하고자 함이 인코텀즈의 근본취지이다. 공식명칭은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며, 11가지 각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핵심이다.

11가지 거래정형조건은 매도인(파는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어디인지 각 조건별로 이해해야 하고, 각 조건이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해상운송조건과 복합운송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포인트이다.

1. EXW : Ex Works 공장 인도조건(=Loco=On Spot Terms라고도 함)

-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철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

2.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의 비용 : EXW+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수출통관비
-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

3.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선측까지의 부두운임
-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 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4.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5.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의 비용 : FOB+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

6.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인의 비용 : CFR+해상보험료
-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 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

7.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의 비용 : FCA+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
(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

8.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의 비용 : CPT+보험계약체결의무
-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

9. DAT :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다. 수출지의 터미널에서 물건을 내린 뒤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건을 내리기(양하)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이다.
- DAT에서도 매도인은 자국을 출발할 때 수출통관을 하여야 하지만, 수출지에서 수입통관이나 관세를 부담하는 수입통관절차를 진행 할 의무는 없다.

10.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조건

- 매도인의 비용 : DAT+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

11.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의 비용 : DAP+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기타의 재고자산에는 건설업 등에 있어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미성공사 및 가설재 등이 있습니다.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합니다 (제37조①).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합니다 (제37조②).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합니다.

(1) 상품의 취득원가

구입가액 + 매입부대비용(운임 · 보험료 · 관세 등) - 매입에누리 - 매입환출

(2) 제품의 취득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재고액 + 당기총제조비용) - 기말재공품재고액
제품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3) 연불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발생이자

- D/A Bill 또는 Usance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합니다.

(4) 취득부대비용

-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취득부대비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실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고자산의 보유에 따른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기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② 비정상적인 사건(예 : 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적 사용)에 따른 지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재고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지출만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과 관련한 수입관세 및 제·세금(기업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제외) 등은 취득원가로 합니다.

(5)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지출

-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그 밖의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② 보관비용(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③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 원가
 - ④ 판매원가
-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37조③).

③ 재고자산의 저가평가

가. 종목별 저가법과 조별 저가법

(1) 저가법의 정의

-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장기간 판매되지 아니 하거나, 진부화되어 판매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중요하게 낮아지면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합니다(제37조④). 이를 저가법이라 합니다.

(2) 저가법의 적용

(가) 원칙 : 종목별 저가법

-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는 결산기말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수량차이와 가격차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고자산의 금액은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종목별 저가법이란 재고 자산의 품목별로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평가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처리방법입니다.

(나) 선택

- 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별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조별 저가법 적용요건

- 재고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조별 저가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적용한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종목별 저가법과 조별 저가법의 비교

(가) 자료

제품별(조별)	항목별	원 가	시 가
갑	A	100	110
	B	200	230
	계	300	340
을	C	300	280
	D	400	500
	계	700	780
병	E	500	550
	F	600	530
	계	1,100	1,080
	총계	2,100	2,200

(나) 평가손실액

- 종목별 저가법 적용 시

$$C(300 - 280) + F(600 - 530) = 90$$

- 조별 저가법 적용 시

$$\text{병}(1,100 - 1,080) = 20$$

(5) 조별 저가법의 선택 여부

- 상기에서 규정된 조별 저가법의 적용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회사의 당기 손익상황을 검토하여 조별 저가법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별 저가법상 평가손실금액이 종목별 저가법의 평가손실금액보다 적게 계상되므로 기업의 공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재고자산감모손실

(1) 재고자산감모손실의 의의

- 재고자산감모손실이란 재고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도난 분실 등에 의해 장부상에 기록된 기말재고수량보다 실제재고수량이 작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 이러한 재고감모손실 중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은 재고자산감모손실의 과목으로 영업외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2) 재고감모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구 분	회계처리			
정상감모손실	(차) 매출원가	×××	(대) 재고자산	×××
비정상감모손실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영업외비용)	×××	(대) 재고자산	×××

5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1) 대 상

- 제조 또는 건설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선박, 대규모 기계 장치, 상가 또는 아파트분양 건설업).

(2) 건설자금이자 계산

-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과 동일하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합니다.

3. 투자자산

1. 의의

가. 개별표시 예시

•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수익 등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제10조①).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 됩니다(제10조②).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며, 투자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분류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산의 예

- 투자부동산
- 장기투자증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장기대여금
- 기타

나. 항목의 의미

(1)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즉, 장래 사업확장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나 유희설비로 곧 폐기될 부동산 또는 채권확보로 유입된 부동산 등도 투자부동산에 해당합니다.

(2) 장기투자증권

- 장기투자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나 만기보유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즉,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이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이나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을 의미합니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으로 합니다.

(4) 장기대여금

- 장기대여금은 대여금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합니다.

(5) 기타

- 기타는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는 투자자산으로 합니다. 만약 상기 예시와 같이 투자자산을 구분표시하는 경우 기타에는 설비확장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특정목적의 예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 의의

- 지분법(equity method)회계는 투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투자주식에 직접 가감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지분법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을 말합니다.
- 이러한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피투자회사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②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 ③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정책 관여의 범위
(재무보고에 관한실무의견서 2007-4, 2007.3.6.)>**

계약 등을 통해 임원선임권한 및 이사회 등의 의결권을 획득하거나, 투자회사 임직원이 피투자회사 임원으로 겸직하거나, 투자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피투자 회사 임원으로 파견되거나, 그 외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 이때 임원은 이사, 감사, 업무집행 지시자(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의미함.

- ④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
- ⑤ 피투자회사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회사가 당해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상기의 ‘~할 수 있는 경우(즉 능력)’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률 정관 계약 등(약정서 등 명칭과 무관)과 같이 피투자회사를 구속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가액과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처분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 변동금액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에 가감합니다.

$$\text{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 = \text{투자주식의 처분가액} - \text{투자주식의 장부가액} \\ + (+)\text{지분법자본변동}^{\text{주)}} - (-)\text{지분법자본변동}^{\text{주)}})$$

$$\text{주) 대차대조표 계상 } (\pm) \text{ 지분법자본변동} \times \frac{\text{처분주식수}}{\text{보유주식수}}$$

사례

1. 자료

- (1) 2017.2.10. A법인은 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 30%(60,000주)를 10억원에 취득하였다. 2017.12.31. 현재 B법인의 자본총액(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과 공정 가치는 일치함)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10억원(1주당 액면 5,000원, 발행주식수 60,000주)
 - 이익잉여금 20억원 / 투자차액은 5년간 상각하기로 한다.
- (2) 2017년 발생 B법인의 당기순이익은 4억원이며, 자본잉여금 2억원이 증가하였다.
- (3) 2018.6.30. 현재 B법인의 반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3억원이다.
- (4) 2018.9.10. A법인은 B법인의 주식 15%(30,000주)를 7억원에 매각하였다.

2. 회계처리

(1) 2017.2.10. 주식취득 시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00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000,000
주) 투자차액의 계산 1,000,000,000 - 3,000,000,000 × 30% = 100,000,000원	

(2) 2017.12.31. 결산 시

① B법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처리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20,000,000	(대) 지분법이익 120,000,000
주) 400,000,000 × 30% = 120,000,000원	

② 투자차액상각액에 대한 처리

(차) 지분법이익 20,000,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000,000
주) 100,000,000 ÷ 5 = 20,000,000원	

③ 자본잉여금 증가에 대한 처리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0,000,000 (대) 지분법자본변동 60,000,000
주) $200,000,000 \times 30\% = 60,000,000$ 원

(3) 2018.9.10. 주식처분 시

① 상반기 B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처리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90,000,000 (대) 지분법이익 90,000,000
주) $300,000,000 \times 30\% = 90,000,000$ 원

② 상반기 투자차액에 대한 처리

(차) 지분법이익 10,000,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00,000
주) $100,000,000 \times 1/5 \times 6/12 = 10,000,000$ 원

③ 투자주식처분에 대한 처리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700,000,00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20,000,000
지분법자본변동 30,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10,000,000
처분이익

주1) $(1,000,000,000 + 120,000,000 - 20,000,000 + 60,000,000 + 90,000,000 - 10,000,000) \times 1/2 = 1,240,000,000 \times 1/2 = 620,000,000$

주2) $60,000,000 \times 1/2 = 30,000,000$ 원

4. 유형자산

1 정의

가. 개별표시 예시

-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제11조①).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됩니다(제11조②).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합니다(제11조③).
-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하며, 유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분류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의 예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건설 중인자산

나. 항목의 의미

(1) 토지

-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을 의미합니다. 토지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埜)·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설비자산

- 설비자산은 생산 및 판매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물¹⁾, 구축물²⁾과 기계장치³⁾로 합니다.

- 1)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을 말합니다.
- 2)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합니다.
- 3) 기계장치, 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을 말합니다.

(3)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의 선급금이 아닌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의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 유의합니다(재무보고에관한실무의견서 2006-2).

(4) 기타

- 기타는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는 유형자산으로 합니다.
이에는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이 해당됩니다.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특정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불규칙적인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 감가상각계산요소

(1) 취득원가

구 분		취득원가
개별취득		구입원가+취득직접비용 ^{주1)} -매입할인 등
장기할부취득		현금구입상당액
현물출자 증여로 인한 취득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일괄취득		총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배분한 금액
국고보조 등으로 인한 취득		공정가치
교환으로 인한 취득	이종자산간 교환	제공자산의 공정가치 ^{주2)} . 단, 제공자산 공정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동종자산간 교환	제공자산의 장부가액 ^{주3)} . 단, 현금수수액이 중요한 경우 ^{주4)} 이종자산간의 교환으로 봄.
자가건설로 인한 취득		제작원가+취득직접비용 ^{주1)}

주1) 취득직접비용

- 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② 외부운송 및 취급비
- ③ 설치비 ④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 ⑥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⑦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 ⑧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복구비용”이라 함)이 총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

주2)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함.

주3)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감액손실 인식 후의 장부가액을 제공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함.

주4) 교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 잔존가액

-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영(0)으로 합니다. 단, 중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취득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합니다.

(3)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체감잔액법(예 : 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합니다.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기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을 회계연도중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회계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월단위 또는 6월단위(동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6월로 하며, 동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함)로 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한 단위는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라. 취득가액 기타요소

(1) 건축물 철거시의 처리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관련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이 때, 신축·개축·재축도 철거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구 분	회계처리	
기존건물 철거시	(차)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처분손실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 ××× ×××
	(대) 건 물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주1)}	××× ×××
토지취득 후 기존건물 철거시	(차) 토 지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주2)}	×××

주1) 철거비용

주2) 철거관련비용 - 철거건물 부산물판매액

(2) 유형자산의 일괄취득시 자산별 안분계산

- 전체 매입금액을 자산별 공정가치로 배부합니다.

(3) 장기연불조건 매입 시

- 유형자산을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할 경우 현금구입상당액(현재가치)을 취득원가로 하고, 실제 총지급액(명목가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여 이를 자본화하거나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때 유효이자율은 현금구입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4) 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

-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 등을 받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하고,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 등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국고보조금

1. 자료

(주)국세는 2017.12.10.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5억원을 수령하였고 수령시 전액 정기예금(단기금융상품에 해당됨)에 가입하였다. 2018.4.1. 취득가액이 10억원인 기계 장치의 취득을 위해 보조금 전액을 지출하였다. 회사는 세무서에 신고한 기계장치의 신고내용연수는 10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상각률 0.259)이다.

2. 문제

- (1) 2017년 회사의 회계처리와 부분재무상태표를 나타내시오. 단, 2016년말 (주)국세의 단기금융상품은 10억원이다.
- (2) 2018년 회사의 회계처리와 부분재무상태표를 나타내시오.

3. 해답

(1) 2017년

① 회계처리

가. 국고보조금 수령 시

(차) 현금	500,000,000	(대) 국고보조금	500,000,000
(해당 자산 차감표시)			

나. 정기예금 가입 시

(차) 단기금융상품	500,000,000	(대) 현금	500,000,000
------------	-------------	--------	-------------

② 부분재무상태표

단기금융상품	1,000,000,000	
(-) 국고보조금	<u>500,000,000</u>	500,000,000

(2) 2018년

① 회계처리

가. 기계장치 취득 시

(차) 기계장치	1,000,000,000	(대) 현금	1,000,000,000
국고보조금	500,000,000	국고보조금	500,000,000
(단기금융상품차감계정)		(기계장치차감계정)	

나. 결산 시

(차) 감가상각비	194,250,000 ^{주1)}	(대) 감가상각누계액	194,250,000
국고보조금	97,125,000 ^{주2)}	감가상각비	97,125,000
(기계장치차감계정)			

주1) $1,000,000,000 \times 0.259 \times 9/12 = 194,250,000$ 원

주2) $194,250,000 \times 5\text{억원}/10\text{억원} = 97,125,000$ 원

② 부분재무상태표

기계장치	1,00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194,250,000	
(-) 국고보조금	<u>402,875,000</u>	402,875,000

(2) 취득 이후의 지출시 처리

구 분	내 용
수선비	① 원칙 : 당기비용 ② 정기 종합검사, 분해수리에 대한 지출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인식 가. 관련 자산과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 가능 나.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
부품, 구성요소 교체비	①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인식 나. 자본적 지출인 경우 관련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 ② 관련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이한 경우 별도 가. 관련 유형자산과 별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 나. 자본적 지출인 경우 교체된 자산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별도자산의 취득으로 처리

4 유형자산의 재평가

(1) 의의

-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득원가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것은 기업의 적정한 재무상태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는 회계의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2008년 12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재평가규정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규정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원가모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였다가 나중에 원가모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평가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에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2) 재평가 대상기업의 종류

-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의 산정

-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감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2009.1.30.에 발표한 실무의견서 2009-1(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 적용시 회계처리)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등 정부의 고시가액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정부의 고시가액을 재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재평가 주기

-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재평가를 수행하면 됩니다.

(5) 재평가 시기

- 반드시 결산일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일 이후 일정시점에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결산일 이후 일정시점에 산정한 공정가치와 결산일 현재의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결산일 현재의 장부금액에 공정가치가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6) 장부금액 계산

$$\text{장부금액} = \text{재평가일의 공정가치} - \text{감가상각누계액} - \text{손상차손누계액}$$

(7) 회계처리

-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한 경우

(차) 유형자산	× × ×	(대) 재평가잉여금 ^{주)}	× × ×
		(기타포괄손익)	
		이연법인세부채	× × ×
		재평가이익 ^{주)}	× × ×

주) 이전에 재평가감소액이 발생한 금액을 손실로 인식한 금액만큼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당해 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한다.

-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감소한 경우

(차) 재평가손실	×××	(대) 유형자산	×××
재평가잉여금 ^{주)}	×××		
(기타포괄손익)			
이연법인세부채(자산)	×××		

주) 이전에 재평가증가액이 있는 경우에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한 금액을 우선 차감하는 것이며, 차감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재평가손실(당기손실)로 계상한다.

(8)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시점의 총장부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사례 유형자산의 재평가

1. 자료

- (1) (주)국세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합니다.
- (2) (주)국세는 2017년 1월 중 유형자산을 10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 (3)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12.31. : 130만원
 - 2018.12.31. : 80만원
- (4)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유형자산이 토지인 경우의 회계처리

(1) 2017.12.31.

(차) 토 지	300,000	(대) 재평가잉여금	300,000
		(기타포괄손익)	

(2) 2018.12.31.

(차) 재평가잉여금	300,000	(대) 토 지	500,000
재평가손실	200,000		

3. 유형자산이 건물인 경우인 회계처리(가정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잔존가치 = 0)

(1) 2017.12.31.

(차) 감가상각비	2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주1)}
(차)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대) 재평가잉여금	500,000 ^{주2)}
건 물	300,000		

주1)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이전에 우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주2)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018.12.31.

(차) 감가상각비	325,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25,000 ^{주1)}
(차) 감가상각누계액	325,000	(대) 건 물	500,000
재평가잉여금	175,000 ^{주2)}		

주1) $1,300,000 \div 4\text{년(잔존내용연수)} = 325,000\text{원}$

주2) 2016.12.31.에 인식한 재평가증가로 인한 금액 500,000원 중 감소한 금액이다.

5 유형자산의 기타문제

(1) 폐기 및 처분

-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영업외손익)으로 합니다. 이때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처분손익을 계산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운휴자산 등에 관한 회계처리

구 분	계정재분류	감가상각/감액손실
사용재개예정 운휴자산	없음.	감가상각하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 처리
사용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에정(운휴)자산	투자자산으로 대체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매 회계연도말 감액손실 여부 검토

5. 무형자산

① 기업회계상 무형자산

가. 정 의

-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합니다(제12조①).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이 포함됩니다(제12조②). 무형자산은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합니다(제12조③).

(1) 개별표시 예시

-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며,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소분류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권 • 산업재산권 • 개발비 • 기타

- 다음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합니다.
 - ① 자산이 분리가능합니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습니다.
 - ②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일부의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등과 같은 물리적 형태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형자산이 담겨 있는 물리적 형태에 관계없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해야 합니다.
-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이 사업결합에 의해 취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인식한 영업권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나. 항목의 의미

(1) 영업권

-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2)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 합니다.

(3) 개발비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습니다.
 -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 기타는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합니다. 만약 상기 예시와 같이 무형자산을 구분 표시하는 경우 기타에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AQ : 개발비의 비용처리 관련 규정과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회계처리 담당자들은 회사의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모두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개발비의 자산 계상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여섯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개발비의 자산 계상이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개발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합당한 회계처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현장의 품질검사(Quality Control)팀을 품질연구소나 기술연구소 등으로 신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단순 노무비를 개발비 처리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자산성을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개발비의 여섯가지 자산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습니다.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감가상각 계산요소

(1) 취득원가

구 분		취득원가
개별취득		구입원가 + 취득 직접비용 - 매입할인
장기할부취득		현금구입 상당액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		발행한 지분증권 공정가액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공정가액(시장가격) 원칙
국고보조 등으로 인한 취득		공정가치
교환으로 인한 취득	1. 이종자산간 교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단, 제공자산 공정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산 공정가치
	2. 동종자산간 교환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단,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 후 제공자산의 장부가액
내부적으로 자산	1. 개발비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 금액
	2. 자가창설영업권, 연구비, 경상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2) 잔존가액

-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영(0)으로 봅니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상각 기간이 작은 경우 상각기간 종료시점에서 제3자 구입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잔존가액은 인식가능합니다.

(3) 내용연수

-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합니다.

(4) 상각방법

구 분	원 칙
영업권	정액법
그 외	정액법, 체감잔액법(예 : 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③ 무형자산상각비 회계처리 방법

(1) 비용배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회계처리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장방법

- 무형자산상각비의 회계처리는 간접법, 직접법 모두 가능합니다. 단, 직접법 적용시에는 간접법표시를 주석기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 무형자산상각비 ××× (대) 자산(또는 상각누계액) ×××

④ 무형자산의 기타문제

(1) 취득 이후의 지출

-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이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미래 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손상차손(감액손실)

-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을 회수 가능가액

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후잔액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3) 자산별 회계처리

(가) 창업비

-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업비(사업개시 관련 비용)를 창업비에 포함시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무형자산에서는 창업비, 개업비, 사업개시비용 모두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연구)개발비

- 최근의 기준은 연구와 개발의 용어 대신 보다 폭넓은 의미의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이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이므로 실무적으로 이들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로 하여 당기비용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로 하여 연구비와 마찬가지로 당기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영업권

- 기업회계상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상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상 각	내용연수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단,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상각방법	정액법으로 월할상각
손상차손 및 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손상차손(당기비용) 인식(단,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될 수 없음)

II 법인세법

1.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은 과세소득 계산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역사적 원가주의에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한적으로 자산의 평가증과 평가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취득형태별 취득가액

- 법인이 매입 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법법§41①, 법령§72①).

종 류	구 분 기 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 + 취득세 등록세 그 밖에 부대비용 - 단,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자가 제조 생산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합병 분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적격합병 또는 적격인적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은 제외) -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시가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 법인이 취득한 주식	비적격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설립하면서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 그 밖의 현물출자의 경우 : 해당 주식 등의 시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법령§15④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종 류	구 분 기 준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 제외)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합병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및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산한 가액에서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단기금융자산 등	매입가액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 과세요건이 발생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시가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영(0)원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 당시의 시가

② 취득가액의 조정

가. 포함하는 금액

(1) 특수관계인이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법법§15②)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의 이자(법령§52①)

-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3) 국·공채 매입시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법령§72③3)

-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나.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법령§72④1)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할부 매입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연지급수입에 따른 지급이자(법령§72④2)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시가초과 매입액(법령§72④3)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불균등증자 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시가초과매입액 등으로 확정된 금액

2. 자산·부채의 평가

-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합니다.

① 법인세법 상 자산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은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를 인정합니다.

-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이익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채권에 한함)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
- 파손 부패 등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 부도발생 등에 의한 상장주식 등의 평가손실
- 파산에 의한 주식의 평가손실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유가증권 제외)의 평가손실
-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의 시가 평가에 의한 평가손익
- 법령§76에 의한 외화 자산 부채의 평가손익

2 감액평가 시 평가방법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①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함.
 - ②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함.
 - ③ 부도발생 등에 의한 상장주식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시가가 1천원 이하인 경우 1천원으로 함).
 - ④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법인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시가가 1천원 이하인 경우 1천원으로 함).
- 자산의 감액평가는 감액평가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감액평가손실은 결산조정에 의하여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에 의하여는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④ 자산유형별 평가방법

-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는 과세소득계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방법의 종류

- 재고자산(유가증권 제외) 가액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① 원가법 :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 | | |
|--------|---------|-----------|
| • 개별법 | • 선입선출법 | • 후입선출법 |
| • 총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매출가격환원법 |

② 저가법 :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

- 재고자산의 평가는 재고자산을 ①제품 및 상품 ②반제품 및 재공품 ③원재료 ④저장품 별로 구분하여 재고자산 종류별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법령 §74②).

(3) 세무조정 및 사후관리

-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기말재고자산의 가액과 세무계산상 평가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 ① 재무상태표 상의 가액이 세무상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합니다.
 - ② 재무상태표 상의 가액이 세무상 평가액보다 많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합니다.

나. 유가증권의 평가

(1) 평가방법의 종류

- 유가증권의 평가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채권에 한정) 중에서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 법령§75③·④에 따라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보유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상기 방법과 시가법 중 신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더라도 세법에서는 원가법만 인정하므로, 유가증권(투자유가증권 포함)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모두 부인됩니다.

5 평가방법의 신고 및 적용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다음의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 류	신고기한
신설법인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신고만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무신고 임의변경 시의 평가방법

-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한 평가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기한 내에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을 평가합니다(법령§74④, §75②).

평가대상 자산	평 가 방 법		
	신고 시	무신고 시	임의변경시
○ 재고자산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원가법 - 저가법	- 부동산 : 개별법 -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유가증권 - 일반회사 보유 - 투자회사 보유	- 원가법 중 • 개별법(채권에 한함)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시가법	- 원가법 중 총평균법 - 시가법	- 총평균법 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시가법

- 법인이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고 그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무신고 임의변경 시의 평가방법에 의하고, 그 후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합니다(법령§74⑤, §75②).

6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의 재고자산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고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재고자산 평가차익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법법§42의2).

가. 대상법인

-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변경신고한 내국법인

나.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1) 일시적인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을 익금불산입합니다.

(2) 5년간 균등 익금산입

- 재고자산 평가차익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3) 해산 시 일시 익금산입

- 재고자산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3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으로 반품되는 경우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회수한 상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42-7...2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건 질의와 같이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 서면2팀-885, 2006.5.18.)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 기준서

발행일자	2018년 3월
발행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정책총괄실
감수	법인세과장 이 현 규 정책총괄실장 서 재 윤
집필편집	국세청 행정사무관 정 필 규 행정사무관 민 강 세무조사관 김 영 주 세무조사관 김 지 윤 세무조사관 강 수 민 세무조사관 박 경 은 세무조사관 임 정 근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 임 성 종 공인회계사 김 민 지
인쇄처	주현기획(044-864-2020)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20)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 정책총괄실(☎02-2124-3115)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 담 · 안 · 내



국세청 대표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